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정웅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시각과 범위

제2장 원스톱 지원센터의 개관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원스톱 지원센터의 개관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제1절 조사 설계 및 설문

제2절 분석 결과

제4장 표준 직무모형 개발과 정책적 함의

제1절 표준 직무모형의 개발

제2절 표준 직무모형의 정책적 함의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경찰청은 2013년 신정부 출범 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근절 정책 추진에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여 왔다. 특히 2013년 상반기부터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각 분야별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경찰관서를 통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처럼 4대악 척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성폭력의 경우 전년(2012) 대비 미검률이 28%포인트 감소(15.5%→11.1%)하고, 재범률이 19%포인트 감소(7.9%→6.4%)하는 등 객관적 지표들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¹⁾

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안전감 측면에서도 체감안전도의 향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3년 하반기에는 분야별 검거·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장애인시설·재가(在家)장애인 방문·홍보, 「밤길 여성안심귀가」 대책 등 체감 안전의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 12월 안전행정부의 조사 결과 국민의 안전체감도는 7월 대비 5.6%포인트 개선되었다(안행부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안전하다’는 의견 24.2%→29.8%).²⁾

세부적으로 볼 때 가정폭력의 경우 불안감(‘안전하지 않다’)이 2.6%포인트 증가(14.8%→17.4%)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성폭력·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각각 44.3%, 52.8%로 직전 조

1) 경찰청, “2013년 주요 성과”, 2014년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계획, 2014. 2.

2) 아시아경제, “국민 3명중 1명 ‘사회 안전해’…가정폭력 불안감은 증가”, 2014.12.26.

사보다 각각 10%, 15.8%포인트 감소함으로써 경찰의 다양한 사회약 근절 정책추진이 성폭력 부문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속되는 성폭력 사건 발생과 언론보도 등에 접함으로써, 성폭력 근절을 정부의 최우선 추진 대책으로 답하는 등(2013. 12월, 안행부 국민안전체감도 조사), 최근까지도 성폭력에 대해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설치 및 인력증원을 통한 전담수사체계 확립 외에도, 피해자 사후 지원 측면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의 수사지원팀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된다. 즉, 피해자는 성폭력 피의자 검거와 사건 해결 외에도, 범죄피해의 치유·회복과정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해야할 대상으로써 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지원관’, ‘피해자 서포터(자원봉사자)’ 운영, 원스톱 지원센터 추가 설치 등이 구상되고 있으나³⁾ 그 중에서도 지원 범주의 포괄성과 효과 측면에서 가장 중핵이 되는 것은 원스톱 지원센터의 강화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스톱 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사지원팀 조직의 업무범주 및 그 업무량 측정이 선결되어야 하고, 나아가 수사지원팀의 직무 및 적정인력 분석을 통한 표준 직무모형 개발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팀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전국 25개소 원스톱 지원센터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원스톱 지원센터의 직무·인력 표준안과 그 정책적

3) 경찰청, “2014년도 4대 사회약 근절 추진 계획”, 2014. 2.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시각과 범위

본 연구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상담, 의료 등의 구성요소(지원기능) 전체를 종합적, 거시적(macro)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센터 내 지원기능 중 수사지원 기능에 배치된 경찰인력과 업무에 초점을 두는 미시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원스톱 지원센터 모든 지원기능들의 업무와 역할, 기능 간 업무흐름, 센터의 성과에 대한 기능별 기여도, 기능간 예산·인력의 합리적 배분 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수사지원 기능에 기본 시각을 두고 해당 경찰의 원스톱 지원센터 내 업무흐름과 여타 기능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연구 범위는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 및 동 센터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으로 한정되었다. 즉 본 연구는 전국 17개소 여성·청소년 피해자 지원센터, 8개소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25개소의 원스톱 지원센터와 센터 내 수사지원팀의 처리 사건을 연구 범위로 하고 있으며, 2014년 5월 현재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 및 수사기능 업무량 분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제3장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 기능의 세부 업무프로세스와 사건 처리 업무량, 업무 여건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제4장에서 원스톱 지원센터 내 수사지원 경찰의 적정 업무량 및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한 표준 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 연구 요약 및

한계와 보완점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원스톱 지원센터의 개관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원스톱 지원센터의 개관

1. 연혁 및 현황

원스톱 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5월 성폭력 피해 진료와 수사지원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위급한 피해자가 제때 조력을 받지 못했던 사건을 계기로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후 학교폭력 사건 또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되면서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 내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설치한데서 출발하였다(<표 1>).

<표 1> 원스톱 지원센터의 주요 연혁

2003	- 성폭력 피해 진료 및 수사지원 지연으로 3일간 병원, 경찰서 전전하는 사건 발생(5월)으로 여성·아동에 대한 원스톱지원시스템 필요성 대두
2005	- 서울 경찰병원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학교·여성폭력 서울 원스톱 지원센터』로 전환 개소(5월) - 경찰병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설치(8.31) - 여성부와 경찰청 간 센터 설치 협의(10월) - 여성부·경찰청·7개병원장 3자 공동 업무 협약 체결 및 부산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2월)

2006	- 여성부·경찰청·6개병원장 3자 공동 업무 협약 체결 및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경남, 제주 등 11개 센터 개소(12월)
2007	- 경기 북부 원스톱지원센터 의정부 의료원 개소(9월)
2008	-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협약 주체 변경(시도, 지방경찰청, 의료기관, 1월) - 서울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2월)
2010	- 충남, 전남 원스톱지원센터 개소(1월) - 부산 원스톱지원센터와 부산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부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통합(1월)
2011	- 울산 원스톱지원센터를 울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통합(12월)
2012	- 강원 원스톱지원센터를 강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통합(12월) - 원스톱지원센터 로고 신설 - 원스톱지원센터 대표 번호 신설(1899-3075)
2013	- 인천성모병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5월) - 경기안산한도병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7월) - 부산의료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8월) - 경기 아주대병원 원스톱지원센터를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전환(12월)

자료: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매뉴얼, 2014, p. 63; 여성가족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사업안내, 2012 1, p. 6 등을 기초로 작성.

2013년 현재까지 각 지방경찰청 소속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의 범주는 위 <표 1>의 주요 연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모두를 포괄한다.⁴⁾

즉 2010년부터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⁵⁾가 통합된

4) 경찰청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두 센터에 대해 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 ‘원스톱 지원센터’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두 센터의 기능 범위 차이(심리치료지원 가능 여부)를 이유로 양자를 구별한다. 나아가 여성가족부는 위 두 센터 외에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이른바 ‘해바라기 아동센터’까지 모두를 통칭할 때는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라고 부르고 있다.

5)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2014년 5월 현재 전국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수사지원 기능이 없으므로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있으나, 경찰청은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과제의 일환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경찰관 1명씩 상주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경찰청, “2014년도 4대 사회약 근절 추진 계획”, 2014. 2.

이른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부산에 개소되면서 센터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원스톱 지원센터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포괄하면서 성장했고, 이러한 원스톱 지원센터는 2013년 말까지 전국 25개소(여성·청소년 피해자 지원센터 17개소 및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8개소)로 확대되어 왔다.

전국 25개소의 원스톱 지원센터에는 2014년 5월 현재 경찰관 100명을 포함하여, 상담사 119명, 행정 30명, 간호사 33명 등 총 28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⁶⁾, 이들 중에서 경찰관과 상담사는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표 2> 전국 원스톱 지원센터 근무자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		3	2	2	1	1	1	1	3	2	1	1	1	2	2	1	1
설치 병원	25	경찰매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인천성모병원 대구의료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병원 안산한도병원 *강릉동인병원 *강원대병원 청주의료원 단국대병원 전북대병원 *목포중앙병원 성가롤로병원 안동의료원 *포항선린병원 마산의료원 한라병원															
경찰	100	5	5	5	4	4	4	4	4	4	4	4	4	4	4	3	3
상담	119	5	4	11	6	3	5	4	4	4	5	3	4	4	6	6	4
행정	30	1	1	1	2	1	1	1	1	2	1	1	1	1	3	2	1
간호	33	0	1	3	2	1	1	1	2	1	1	2	1	1	1	1	1

주: 1) *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 경찰관 현원(100명)은 2014. 5. 30일 기준.
 3) 상담(119), 행정(30) 간호(33) 인력 현원은 2014. 2월 경찰청 자료 기준.
 자료: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매뉴얼, 2014. 2, p. 68 및 필자 실사(2014. 5월) 결과를 기초로 작성.

6) 경찰관 이외 인원수는 경찰청의 2014. 2월 자료 기준.

다만, 서울대병원 등 일부 원스톱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간호사도 24시간 교대 근무가 이루어져 야간 의료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찰·상담사 이외의 여타 근무자는 일근(09:00~18:00)으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원스톱 지원센터의 경찰관 근무인원 현황을 보면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만 1개소 당 5명이 근무하고, 일반적으로는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원도 강릉, 경북, 경남, 제주 지역 내 5개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2. 운영체계 및 실적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원스톱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에 따라 원스톱센터는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 지원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⁷⁾

이러한 원스톱센터의 설치·운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⁸⁾ 동 법률에 따라 원스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원스톱지원센터의 예산을 확보·집행하고 사업지침 등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

7) 여성가족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2012. 1. p. 3;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매뉴얼, 2014. pp. 64-66.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당하면서, 경찰·지자체(시도)·병원 등과 함께 공동협약(3자간 또는 4자간)에 의해 운영되는 위탁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표 3> 원스톱센터의 운영체계

기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시도	병원
분담 업무	-예산 확보 -센터운영 및 설치 지원 -사업지침 수립	-여경과건 -수사지원	-사업비 교부 -센터관리 및 지도감독	-설치공간 무료제공 -의료지원

주: 1) 위 4개 기관 외에도 원스톱센터 운영지원, 중사자교육·피해자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운영을 담당하는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이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성·학교폭력 ONE-STOP센터)”, <http://www.mogef.go.kr> (2014. 5. 30 검색);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매뉴얼, 2014, p. 64.

원스톱센터의 업무 처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센터장, 부소장⁹⁾이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경찰관 및 상담사(24시간 근무), 간호사, 행정요원 등 전담인력들이 팀별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형태를 갖는다.

기능(팀) 및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원스톱센터 내에는 상담/심리치료지원 기능, 의료지원 기능, 수사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바, 각 기능(팀)별 전담인력과 주요 담당업무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피해자 상담을 위한 상담지원팀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사례접수 및 관리, 피해자 초기 면접, 연계지원망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심리치료기능이 강화된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

9) 센터장은 병원장이 겸임(비상근)하고, 부소장은 경찰이 겸직하거나 또는 여가부에서 채용한 직원이 맡고 있다. 경찰(수사지원팀장)이 부소장직을 겸하고 있는 곳은 2014년 5월말 현재 전국 25개 센터 중 9개소이다.

에서는 그 외에도 임상심리사와 심리치료사 등이 심리적 진단평가를 위한 종합심리검사, 피해자의 개별 및 집단 심리상담, 가족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심리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사지원 기능을 위한 수사지원팀에서는 성폭력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피해자 진술녹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속기사·진술분석전문가 법률조력인 등 전문가 섭외, 일선 성폭력 담당 부서와의 업무협조 등 업무를 처리한다.

<표 4> 원스톱센터의 업무처리 모델

주요기능별	전담인력요소	업무 내용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 여경(24시간근무) · 행정요원,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 1366, 112, 상담소 등과 연계
업무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장 · 부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운영 총괄, 사업수행 지도·감독 · 직원 복무관리, 예산 및 물품관리 · 병원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상담/심리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사 · 사회복지사 · 임상심리사 · 심리치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접수 및 관리 · 피해자 초기 면접 · 연계지원망 구축 · 심리적 진단평가 · 피해자심리 안정조치 ·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병원 의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학과 전문의 - 산부인과 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전담 간호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응급치료 · 외과, 산부인과 및 정신과 치료 · 진단서 발급 <p>※ 여성가족부의 의료비 지원 활용</p>

수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근무 여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경찰청 소속 여경 파견근무 · 해당 지방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물 채취(응급키트 활용) · 피해자 진술녹화 ·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 전문가 섭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기사 섭외 - 진술분석전문가 섭외 - 법률조력인 섭외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 법률상담, 자문 ·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관여 ※ 여가부의 무료법률구조사업과 연계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관련부서 · 센터 설치병원 · NGO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운영 관련 주요사항 토의 및 결정 · 연계기관 네트워크 구심점 역할 수행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성·학교폭력 ONE-STOP센터)”, <http://www.mogef.go.kr> (2014. 5. 30 검색); 여성가족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2012. 1, p. 12; 여성가족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사업안내, 2012. 1, p. 16;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매뉴얼, 2014, p. 69 등을 기초로 작성.

원스톱센터의 피해자 방문 및 지원 실적을 보면 최근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0,074명이었던 방문 피해자 수는 2013년 19,655명으로 두 배 가까운 95.1%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008년 6,818명에서 2013년에는 두 배가 넘는 14,572명으로 113.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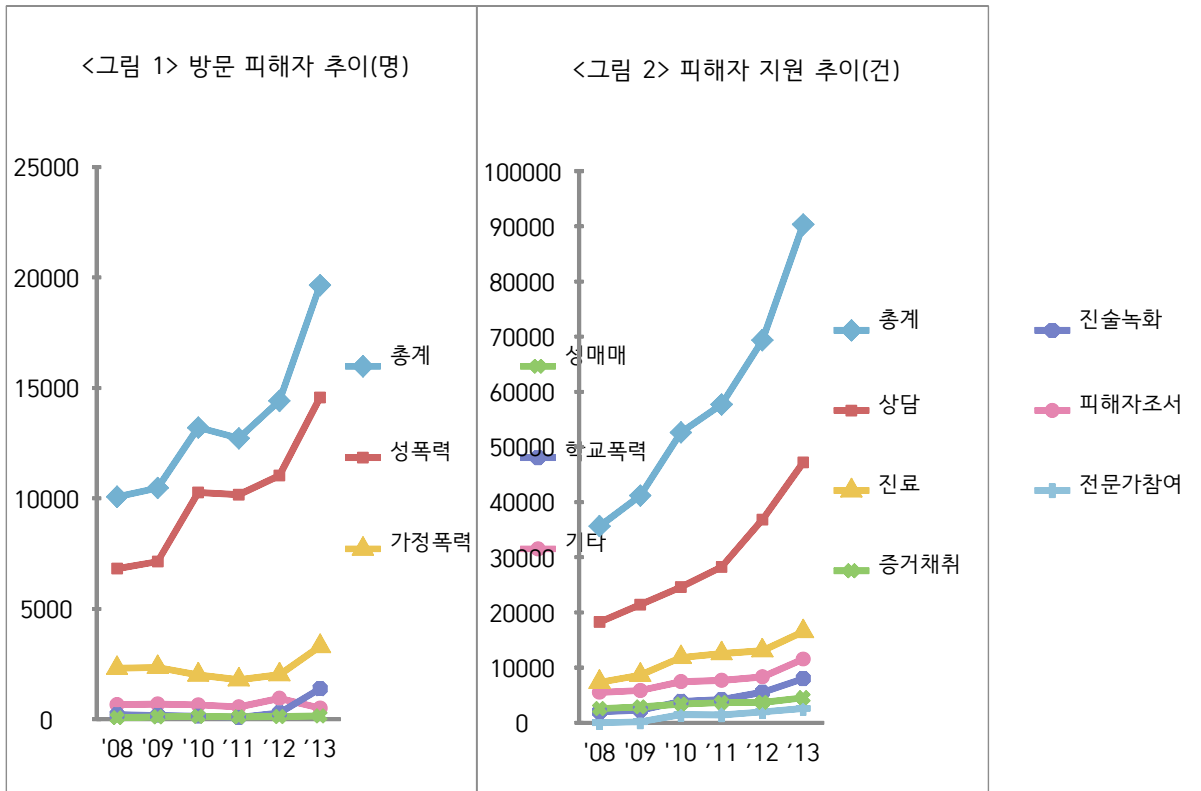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 역시 2008년 35,643건에서 2013년 90,358건으로 피해자 방문 증가율보다 많은 253.5% 증가하였고 특히 진술녹화의 경우는 2008년 1,977건에서 2013년 7,990건으로 무려 네 배가 넘는 40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피해자 원스톱 방문 및 지원 실적 추이

(단위: 명, 건)

구 분	방문 피해자(명)						피해자 지원(건)						
	총계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학교 폭력	기타	총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 조서	전문가 참여
'08년	10,074	6,818	2,312	70	209	665	35,643	18,258	7,335	2,571	1,977	5,502	-
'09년	10,471	7,140	2,348	116	177	690	41,180	21,400	8,632	2,876	2,273	5,839	160
'10년	13,211	10,265	2,012	134	142	658	52,647	24,593	11,838	3,399	3,886	7,450	1,481
'11년	12,722	10,169	1,788	110	92	563	57,717	28,240	12,528	3,641	4,201	7,674	1,433
'12년	14,423	11,032	2,020	127	294	950	69,376	36,810	13,066	3,693	5,528	8,302	1,977
'13년	19,655	14,572	3,303	156	1,386	512	90,358	47,183	16,532	4,509	7,990	11,550	2,594

자료: 경찰청(2014), p. 68.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원스톱센터의 수사지원 기능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은 제도적 접근시각에서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박노섭 외, 2013), 심리적 연구시각에서 “대리외상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외상신념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차영주, 2013) 등이 있다.

전자는 성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어 온 원스톱센터에 대하여 그 실증적인 효과분석과 센터 재편 모색 등 제도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경찰관 외상 연구와는 달리 수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진술조사와 관련하여 원스톱센터 여경의 대리외상 영향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적 분석과 업무 스트레스 및 행동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근무 여건을 감안한 직무모형 구축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나, 본 연구가 추구하는 원스톱센터의 표준 직무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제도적, 심리적 분석 외에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량 추정에 관한 연구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경찰관 업무량 분석 중에서도 특히 수사기능과 관련하여 사건처리 업무량 측정이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KDI, 1992),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서 경제팀 연구(2012) 및 성폭력 전담팀 연구(2013) 등이 있다.

1992년 KDI의 연구는 수사업무 중에서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업무와 고소·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조사업무(현재의 경제팀 업무)를 구분하고, 형사와 외근형사와 조사계 조사요원의 사건 1건당 처리 소요시간과

부족인원 등을 추정하였다.

1992년 이후 변화된 수사 환경과 근무 여건을 반영하여 2012년 치안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기능 중에서 상기 조사계의 업무 범주에 해당하는 경제팀의 경제범죄 수사업무에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해당 경제팀 수사관의 건당 처리 소요시간을 측정할 바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의 2012년 연구는 1992년 KDI의 연구와 비교하여 경제팀 업무에 분석범위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KDI의 면담 조사 방식과는 달리 전국 경찰서 경제팀의 사건 접수 내역(상담 후 반려된 사건 포함)을 기초로 표본추출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전 연구가 시도하지 못한 사선유형별 추정, 즉 사건처리의 난이도 및 최종에 따른 유형구분과 유형별 소요시간을 추정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KDI의 연구에서는 강력범죄의 경우 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40시간,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평균 소요시간은 25시간으로 조사되었으나,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제팀 연구에서는 사건 처리 내역 보다 세분화하여 중요 사건에 대한 “추적수사”와 “팀장지휘” 등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나, KDI의 고소·고발 사건보다 적은 21.8시간의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치안정책연구소는 2013년에 일선 경찰관서의 성폭력 수사 전담팀 설치 및 확대를 준비하면서 서울 관악서의 시범 전담팀과 관악서 형사과를 대상으로 업무량 추정 및 직무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동 연구는 시범관서의 특성상 1개 경찰서에 연구 대상이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형사과의 성폭력사건 수사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을 비교 추정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성폭력 수사 전담팀 연구는 경제팀 연구와 같이 범죄 유형을 강제추행, 공중장소밀집추행, 강간(미수), 카메라이용 촬영 등으로 세분하여 각

성폭력 범죄 12개 유형의 수사 소요시간과 적정업무량을 추정하였다.

<표 6> 선행연구의 비교

구분	KDI, 용역연구 (주학중, 1992)	치안정책연구소, 경제팀 연구 (정웅, 2012)	치안정책연구소 성폭력 전담팀 연구 (정웅, 2013)
조사 대상	외근형사, 조사요원	전국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관악서 시범전담팀. 관악서 형사과
연구 방법	관계자 면담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현지조사,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사건 유형 구분	-형사·조사 두가지만 구분 -반려사건 미포함	-경제범죄 11개 유형 구분 -난이도·죄종 구분, -반려사건 포함	-성폭범죄 12개 유형 구분 -강제추행, 공중장소밀집추행, 강간(미수), 카메라이용 촬영 등
근무 일수	300일 (2,400시간)	251일 (2,008시간) ※ 주5일제 도입	251일(2,008시간)
1건당 평균 처리 소요 시간	-외근형사: 40시간 -조사요원: 25시간	-21.8시간(반려사건 제외) -반려사건 46.6분	강력팀: 28.8시간 전담팀: 17.4시간
연간 1인당 적정 처리 건수	-외근형사: 60건(月 9건), -조사요원: 96건(月 8건)	-경제팀 수사관: 119.4건(전체평균)= 정식접수 91건(月 7.6건) + 상담반려 28.4건(月 2.3건) -사건유형별 소요시간이 상이하므로 실제의 배정사건 basket에 따라 개인별/ 팀별 적정 처리건수는 달라짐.	-기본모형의 경우, 강력팀 69.8건, 전담팀 115.2건 -업무범위와 업무손실 등이 고려된 확장모형의 경우에, 적정 처리건수는 감소
정책 제안	1인당 연간 적정처리건수 등을 고려, 외근형사 3,822명, 조사요원 435명 증원 제안.	2011-12년 연평균 정식접수 437,852건, 상담반려 137,262건(전체접수 575,114건) 및 사건당 평균처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 경제팀 2,073명 증원 제안.	2010-12년 연평균 성폭력사건 발생건수 36,719건 및 확장모형 사건당 처리시간 등을 고려, 서울청 183.5명을 비롯, 전국 총 663.8명의 성폭력 전담팀 증원 제안.

자료: 주학중 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정웅,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12; 정웅,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 미간행 보고서, 2013. 9 (간행자료는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발생사건 및 사건당 평균처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경제팀의 경우에는 2,073명의 수사인력 증원을 제안한 바 있으며,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경우에는 특히 전국 관서에 확대 실시에 즈음하여 서울청 183.5명을 비롯, 전국 경찰서에 약 664명의 성폭력 전담팀 증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제3장 조사 및 분석 결과

제1절 조사 설계 및 설문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원스톱센터 내의 수사지원 기능 및 이를 위해 배치된 경찰의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수사지원 기능이 있는 원스톱센터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까지를 포괄하는 소위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전체 근무자가 아니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중에서도 수사지원을 위해 근무하는 경찰관만으로 한정되었다.

전국 원스톱센터의 경찰관 수는 2013년 말 98명이었으나, 이후 설문조사가 준비되던 2014년 초에 2명이 늘어나(강원대병원 3명→4명, 전북대병원 3명→4명) 본 설문이 진행된 2014년 5월 기준 총 100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이라는 조사대상 모집단 정의를 충실히 따르다면, 그 범주는 2005년 경찰병원의 원스톱센터 개소 이후 2014년 현재까지 원스톱센터 근무 경험이 있는 전체 경찰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직 이동 후 경찰관은 사건 처리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조사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기억 편견의 우려가 있고, 특히 본 연구가 역사적 추이보다

는 현 원스톱센터의 직무 분석과 업무량 추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현재 원스톱센터 근무 중인 경찰관으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대상은 2014년 5월 현재 전국 16개 지역 25개 원스톱센터에 배치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하였으며, 이들 원스톱센터 경찰관 100명 전수(全數)에 대하여 진술녹화 등 업무처리와 업무수행 여건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¹⁰⁾

설문지 구성은 우선 직무분석(업무프로세스 기준)과 업무환경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경찰관의 직접적인 업무 즉 피해자 조사 등 사건 처리의 업무량 측정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피해자 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으로서 근무형태, 물적 인프라, 원스톱 내외의 기능 간 애로, 업무손실 등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업무 및 업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를 개관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우선 직무분석 측면에서 피해자 조사업무 범주는 크게 ① 조사 전 (준비)업무, ② 본 조사업무, ③ 조사 후 (처리)업무 등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피해자 사례접수 후 이루어지는 ① 조사 전 업무는 다시 조사기초 준비와 진술녹화 준비 업무로 세분하였다. 조사기초 준비업무는 전화상담 또는 당일 피해자 긴급 방문 시에 사건내용 확인, 조사일정 준비, 참여인력 준비 등의 업무를 포괄한다. 진술녹화 준비 업무는 녹화 당일 부모 및 신뢰자 상담, 피해자 상담, 고소장 등 각종 양식 작성 지원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전화상담 없이 피해자 (긴급)방문 시에는, 위의 조사기초 준비업무는 녹화당일 진술녹화 준비업무와 같은 날 진행될 수 있다.

10) 선행연구인 성폭력 전담팀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이 시범관서인 관악경찰서의 시범전담팀(팀장 제외 조사관) 4명, 형사팀(형사과 형사당직 및 강력 1팀 ~ 6팀 수사관) 약 80명 등 해당부서 현재 재직 인원으로 한정되어 complete survey가 가능하였다.

<표 7> 원스톱센터의 피해자 조사업무(업무프로세스 기준) 및 업무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설계

업무 프로세스	세부업무 범주	업무내용	조사 목적
조사前 (준비) 업무	조사기초 준비	전화상담 시(또는 당일 긴급 방문 시): 사건내용 확인, 조사일정 준비, 참여인력 준비	업무량 (시간) 추정
	진술녹화 준비	녹화 당일: 부모 및 신뢰자 상담, 피해자 상담, 고소장 등 각종 양식 작성 ※ 전화상담 없이 (긴급)방문 시, 조사기초 준비업무는 녹화당일 진술녹화 준비업무와 같은 날 진행	"
本 조사 업무	증거물 채취	응급키트활용 증거채취(의사 콜~대기시간 포함)	"
	진술 녹화	진술 녹화 조서 작성	진술조력인(전문가) 또는 진술분석전문가, 속기사 등 참여
		非녹화 조서 작성	진술녹화하지 않은 사건
조사後 (처리) 업무	서류정리	조서열람 및 날인, 속기록 간인, 수사보고서작성, 각종 대장정리, 상담결과입력, 국선번호인 신청	"
	피해자 지원	향후 수사진행 안내, 민원 응대	"
	조사후 조치	성폭력전담수사팀 등에 인계 및 심리평가결과, 진술분석결과보고서 등 수사지원	"
소계			총 (분)
업무 환경	세부 범주	주요 설문조사 내용	조사 목적
조사 여건	시설, 장비, 전산시스템	조사업무 물적 인프라의 실태와 문제	인프라 개선
근무 형태	근무유형, 외상유무	24시간 교대근무(유형) 및 그에 따른 심리적 외상(대리 외상) 수준	인원 충원
지원 기능간 애로	의료, 상담 등	원스톱 內 업무수행과정상의 애로	원인별 개선
경찰 기능간 애로	수사팀 등	원스톱 外 업무수행과정상의 애로	원인별 개선
업무 손실	연가·교육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에 따른 (정상적) 손실 실태	근무 시간 재산정

다음으로 ② 본 조사업무는 증거물 채취, 진술녹화로 구분하고 증거물 채취는 응급키트를 활용한 업무로 의사 콜(요청)에서부터 대기시간을 포함한 증거자료 수집업무이다. 조사업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진술녹화에 의한 조서작성업무 역시 이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아동이나 장애자가 아닌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녹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非녹화 조서작성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조사 후 처리업무에는 조서열람 및 날인, 속기록 간인, 수사보고서작성, 각종 대장정리, 상담결과입력, 국선변호인 신청서류정리 등 서류정리 업무가 주요 세부업무로 들어있다. 또한 향후 수사진행에 대한 안내, 다양한 피해자 민원사항 응대 등의 피해자 지원업무가 이루어지며, 이밖에도 경찰관서 성폭력 전담수사팀 등에 사건을 인계하고 심리평가결과 및 진술분석결과보고서 등 기타 수사지원을 하는 조사 후 조치업무가 포괄된다.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는 ① 조사 여건, ② 근무 형태, ③ 원스톱 內 지원기능 간 애로 ④ 원스톱 外 경찰기능 간 애로, ⑤ 업무 손실 등으로 크게 다섯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조사 여건의 세부 범주로는 조사시설, 장비, 전산시스템 등 조사업무의 물적 인프라, 근무 형태의 세부 범주로는 교대근무 유형과 24시간 업무수행 중 대리외상의 유무 및 그 수준을 포함하였다.

원스톱 內 지원기능 간 애로에는 의료, 상담 기능들과의 업무수행과정상 애로 사항을, 원스톱 外 경찰기능 간 애로에서는 원스톱 경찰관과 경찰관서 등과의 관계에서 애로점을 담았다.

이외에 업무 손실에서는 연간 실시한 연가·교육 시간을 조사하여 경찰

관의 정상적인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업무 손실 실태 조사를 계획하였다.

2. 설문 및 데이터

본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초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성폭력대책계) 및 전국 16개 지방청 원스톱센터 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약 3주간(2014. 5. 7 ~ 5. 28)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현재 원스톱센터에 재직 중인 여성경찰관(100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00%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원스톱센터는 현재 그 업무의 특성과 근무지 여건상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해당 지역 병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 또한 근무지가 일선 경찰관서와 격리되어 있다. 여기에 경찰 내부통신망(전산망) 또한 경찰관서와 연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3~5명의 소수 인원이 24시간 당직 교대근무로 비번일인 경우가 많아 설문 요청 등 업무연락에서부터 답지 회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난점이 있었다.

이처럼 설문 요청 및 설문답지 작성, 지방청 취합, 송부 등 업무협조에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설문지는 당초 기대한 회수기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5월 말까지 100% 회수하였으며, 특히 불성실한 답변 항목이 거의 없이 충실한 답변지로 회수됨으로써 설문지 전체를 유효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 점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조사 당시 원스톱센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인 경찰관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일부 설문 항목을 작성하지 못하여 결측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본 설문은 진술녹화에 의한 조서작성에서 일반인, 장애인, 아

동, 장애아동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그 소요시간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근무 중인 경찰관중 원스톱센터 근무 기간이 짧은 경찰관의 경우에는 모든 유형을 경험할 수 없어 결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는 경찰관 1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일부 업무량 추정, 업무 여건 분석 항목에서 불가피하게 관측수가 100명 전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한 데이터 외에, 지역(지방청)별·센터별 업무량 및 적정 수요인원 등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센터별 방문 인원 및 조치 건수 등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조사에서 일반인, 장애인, 아동, 장애아동 등 사례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소요시간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연령 및 장애 유무에 대한 통계자료도 필요하다.

경찰청이 홈페이지 혹은 매뉴얼 등을 통해 공표하는 통계자료는 전국적 규모에서의 상담, 진료, 증거채취, 진술녹화, 피해자조서 등 부문별 조치 자료만이 제공되었기에, 지역별·센터별·연령별·장애자별 자료는 경찰청에서 별도로 제공한 2008-2013년간의 해당 피해자 조치 실적 기초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제2절 분석 결과

1. 응답 경찰관에 대한 기초통계

업무프로세스에 기초한 직무분석 및 그 직무에 따른 업무량, 업무환경 등을 파악하기에 앞서 설문에 응한 전국 25개소 원스톱센터 100명의 여자경찰관에 대하여 소속 원스톱센터의 성격(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또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소속 원스톱센터의 현원, 직위, 계급, 연령, 경찰관으로서의 총 재직 년수, 센터 근무경력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원스톱센터의 성격을 보면 전체 경찰관의 69%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31명은 8개소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2010년 부산 지역에서부터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통합되면서 점차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지난 2013년 12월말에는 경기남부지역에 소재한 아주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통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명칭을 바꾸어 그 자체 성격이 변경되는 등의 추세를 볼 때, 향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소속된 경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4년 5월 현재 원스톱센터 수사지원 기능의 인원 규모는 3~5명이다. 이중 수사지원팀의 현원이 3명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총 15명(5개소), 4명인 원스톱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총 60명(15개소), 5명인 원스톱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총 25명(5개소)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과반 이상(60%) 대다수 인원이 4명이 배치된 15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일부지역(5개소)에서는 5명이 배치된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는 경찰관도 있지만(25%), 3명으로만 구성된 수사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15%에 달한다.

<표 8>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4년 5월 현재)

변수	측정 항목	빈도	퍼센트(%)
전체(N=여자경찰관 100명)		100	100
소속센터 성격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69	69.0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31	31.0
소속센터 현원	3명	15	15.0
	4명	60	60.0
	5명	25	25.0
직위	부소장 겸직 팀장 ¹⁾	9	9.0
	팀장 ²⁾	15	15.0
	팀원	76	76.0
계급	경장	18	18.0
	경사	50	50.0
	경위	31	31.0
	경감	1	1.0
연령	20대	3	3.0
	30대	53	53.0
	40대	43	43.0
	50대	1	1.0
경찰관 총 재직 년수	3년미만	1	1.0
	5년이상~10년미만	24	24.0
	10년이상~15년미만	42	42.0
	15년이상	33	33.0
원스톱 부서경력 년수	6개월미만	25	25.0
	6개월이상~1년미만	17	17.0
	1년이상~2년미만	10	10.0
	2년이상~3년미만	19	19.0
	3년이상	29	29.0

주: 1) 겸직 팀장이 있는 곳은 서울의 경찰병원 및 보라매병원,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및 인천성모병원, 대구의료원, 광주 조선대병원, 목포중앙병원, 안동의료원 등 9개소.

2) 경남지역 원스톱센터(마산의료원) 수사지원팀(현원 3명)은 팀장 없이 운영되고 있음.

원스톱센터에서 직위를 보면 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은 76명, 수사지원팀 책임자 팀장은 총 24명이다. 24명 팀장 중 원스톱센터 부소장직을 겸하고 있는 팀장은 9명이다. 한편 경남지역 1개소(마산의료원)의 경우, 수사지원팀(현원 3명)은 팀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관들의 계급은 경장 18명, 경사가 가장 많은 50명, 그 다음으로 경위 31명이며, 경감도 1명이 포함되었다. 팀장이 있는 24개소 원스톱센터의 경위 또는 경감급 팀장 외에 팀장을 맡지 않는 경위급 팀원도 8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관들의 연령대는 20대 3명, 30대 53명, 40대 43명, 50대 1명으로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관 재직 년수를 보면 3년 미만이 1명, 5년 이상~10년 미만 24명, 10년 이상~15년 미만은 가장 많은 42명이고, 15년 이상도 33명에 달하였다.

원스톱센터 근무경력은 6개월 미만이 25명, 6개월 이상~1년 만이 17명으로 1년 미만된 경찰관 비중이 42%에 달하고 있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10명, 2년 이상~3년 미만 19명이며, 3년 이상의 장기근무자는 29명이다.

■ 전체적으로 볼 때 2014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원스톱센터 女警像은 팀장 포함 4명으로 구성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센터에서 근무하며, 경찰 입직 후 10년 이상 되었지만 원스톱센터에 근무한지는 1년 미만인 30대의 경사이다.

2. 피해자조사 업무량 분석

피해자조사 1건당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개관해 보면, 아래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피해자 사례접수 후 조사 전 준비업무 단계로서 사건내용 확인, 조사 일정 준비 등의 조사기초 준비는 1건당 평균 약 9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신뢰자 및 피해자 상담, 고소장 등 각종 양식 작성 등 진술녹화를 준비하는 데에는 약 99분이 소요되었다.

<표 9> 피해자조사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

단계	세부업무	N	범위	최소값	최대값	평균 (분)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조사前	조사기초 준비	98	180	60	240	93.98	42.999	1.220	1.330
	진술녹화 준비	99	120	60	180	98.79	34.620	.216	-.685
本 조사	증거채취	99	450	30	480	113.94	71.455	2.701	10.377
	피해자조사 (일반인)	99	180	60	240	120.91	33.323	.760	2.980
	(아동)	98	240	60	300	140.20	39.428	1.741	3.022
	(장애인)	97	180	120	300	157.11	42.816	1.063	1.081
	(장애아동)	94	300	60	360	158.30	48.073	1.265	2.612
	(非녹화조사)	97	210	30	240	103.61	30.006	.959	4.189
조사後	서류정리	99	180	60	240	113.33	43.612	.824	1.206
	피해자지원	99	200	40	240	72.53	30.181	2.826	10.039
	조사후조치	92	90	30	120	82.83	30.610	-.135	-1.207
	유효수 (목록별)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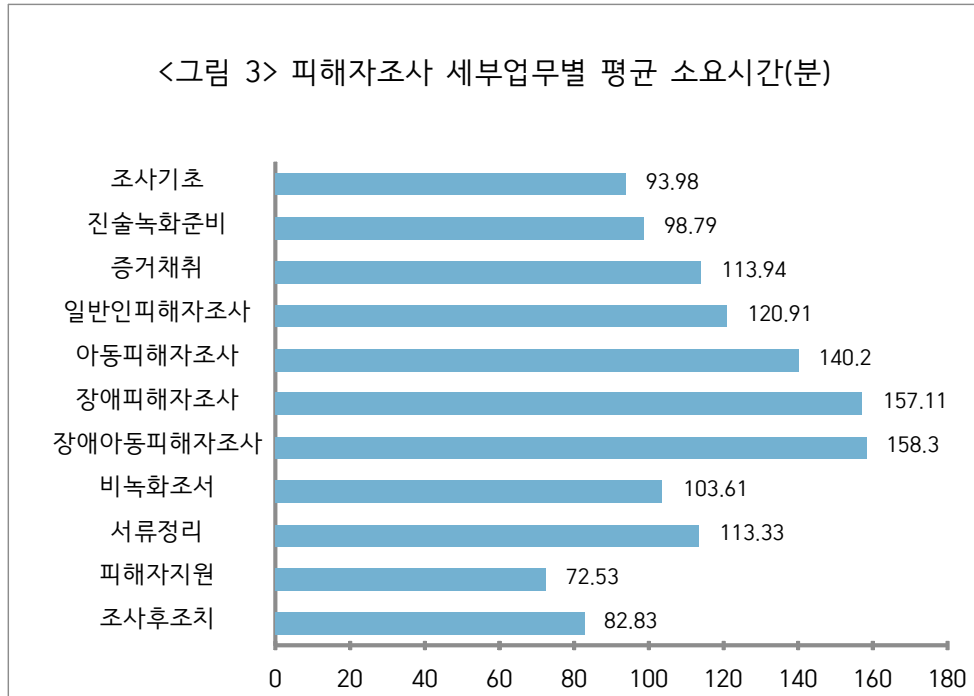
본격적인 조사업무 단계에서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자료 수집은 평균 114분으로 나타났고, 이후 각 조사 유형별로 일반인피해자 진술녹화의 경우 121분, 아동피해자 140분, 장애인피해자 157분, 장애아동피해자 158분, 이외 진술녹화를 하지 않는 非녹화 조서작성의 경우 10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후 처리 단계에서 서류정리는 1건당 평균 113분이 걸렸으며, 피해자지원 업무는 73분, 조사 후 조치는 83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업무 항목에서 가장 많은 시간에 소요된 것은 장애아동피해자(158분)에 대한 진술녹화조사의 경우였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피해자(157분), 아동피해자(140분), 일반인피해자(121분)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사건처리시간에 기준한 업무량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진술녹화에 의한 조사업무가 수사지원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업무임을 알 수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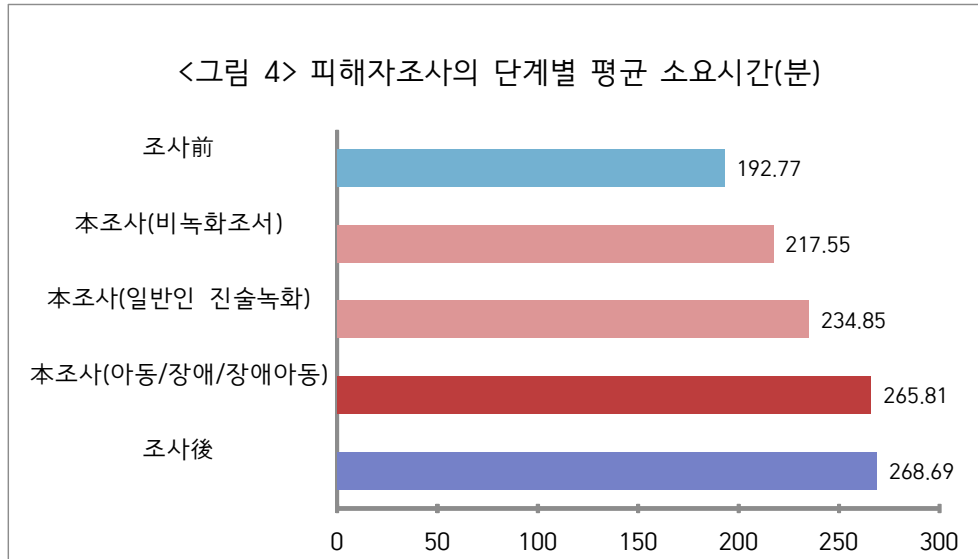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본 조사업무 단계에서의 세부업무 중 하나인 증거채취(114분)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후 처리업무 단계에서 각종 서류정리(113분)도 본 조사에서의 업무들에 못지않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림 3> 피해자조사 세부업무별 평균 소요시간(분)



피해자 조사업무에 대한 업무량을 보다 큰 범주에서의 조사업무 단계별로, 즉 ① 조사 전 준비업무, ② 본 조사업무, ③ 조사 후 처리업무 등 세 단계로 구분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조사 전 준비 약 193분, 본 조사업무(일반인 녹화조사 기준) 235분, 조사 후 처리업무 269분 등으로 나타난다(<그림 4>).

즉 증거자료 수집(증거채취)과 진술녹화 조사(일반인피해자, 아동피해자, 장애인피해자, 장애아동피해자)가 개별 세부업무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업무 단계별로 볼 때는 서류정리와 피해자지원, 조사후 조치 등으로 구성된 조사 후 각종 사건 처리업무가 본 조사업무 보다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조사는 비녹화조서의 경우 약 218분(증거채취 113.94분 + 조서 103.61분), 일반인 진술녹화 235분(증거채취 113.94분 + 녹화조사 120.91분), 아동/장애인/장애아동 진술녹화 266분(증거채취 113.94분 + 아동/장애인/장애아동 평균 녹화조사 151.87분)으로서, 본 조사에서도 가장 긴 아동/장애인/장애아동 대상 진술녹화조사에 대비해 보아도 조사 후 처리업무가 더 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상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을 업무의 세부내역별 내지 단계별로 살펴본 것에 기초하여, 원스톱 수사지원 기능에서 처리하는 각 사건들의 건당 전체 처리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조사기초 준비에서부터 본조사, 조사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체 프로세스(조사 전 + 본조사 + 조사 후)의 소요시간을 피해자 유형별로 추정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피해자 유형별 평균 소요시간(조사前~조사後 까지 쏘프로세스)
기술통계량**

유형		N	범위	최소값	최대값	합계	평균(분)	표준편차	분산
①	일반인	100	810.00	390.00	1200.00	69630.06	696.30	143.41385	20567.534
②	아동	100	870.00	390.00	1260.00	71559.56	715.59	148.58292	22076.886
③	장애자	100	810.00	450.00	1260.00	73250.49	732.50	148.09211	21931.272
④	장애아동	100	870.00	390.00	1260.00	73368.94	733.68	148.72162	22118.122
①~④	진술녹화 평균	-	-	-	-	-	719.52	-	-
⑤	비녹화 조서	100	780.00	390.00	1170.00	67899.98	678.99	137.91709	19021.124
①~⑤	피해자 조사평균	-	-	-	-	-	699.26	-	-

일반인 진술녹화조사, 장애자 진술녹화조사, 장애아동 진술녹화조사, 비녹화 조사로 그 유형을 나누어 보면 우선 일반인 피해자의 경우 평균 처리시간(\bar{h})은 약 670분, 아동 피해자의 경우, 약 716분, 장애피해자의 경우 733분, 장애아동의 경우 734분, 비녹화 조서작성의 경우에는 약 679분으로 추정된다.

사건 1건당 전체 처리시간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피해자조사 업무 세부내역 내지 단계별로 합산하여 구해볼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세부내역에서 발생한 결측치들을 계열평균

으로 대체하여 100명의 관측수로 사건 1건당 처리시간을 추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송 설문지가 성실한 답지 상태로 100% 회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스톱센터 근무경력이 6개월 또는 1년 미만인 경찰관의 경우 모든 유형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불가피하게 일부 설문 항목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에 따라 조사 항목별로 1건 내지 최대 8건의 결측이 발생하였으나, 케이스별 일부 항목의 결측으로 케이스 전체가 폐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계열평균으로 대체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¹¹⁾

지금까지의 업무량에 대한 개별 논의들을 다시 전체적인 직무분석과 그 업무량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피해자 유형별 평균 소요시간 차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조사 단계에서 조사 유형이었다.

즉 앞서 보았듯이 본 조사는 일반인피해자, 아동피해자, 장애인피해자, 장애아동피해자, 非녹화 조서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실제로도 각기 상이한 조사시간을 갖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바로 이 차이가 피해자 유형별 평균 소요시간 차이를 결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이러한 유형별 평균 소요시간 추정 값에 대해 경찰관의 팀내 직위(팀장, 팀원) 또는 원스톱센터 근무경력(년수) 등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우선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팀내 직위, 즉 팀장과 팀원 여부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평균 소요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한가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일단 <표 11>의 직위별 두 집단 기술통계량에서 보듯이 일반인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조사에서 팀원 76명의 조사시간 평균은 121.97분, 팀

11) 업무 내역별 합산 방식을 취하여도 그 결과는 본 연구의 계열평균에 의한 결측값 대체 방법과 차이가 거의 없다.

장(부소장 겸직 팀장 9명 포함) 23명의 조사시간 평균은 117.39으로 팀원들의 조사시간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4.58분으로 크지 않았다.

<표 11> 원스톱 직위별 피해자조사(일반인 진술녹화)에 대한 기술통계량

	직위	N	평균(분)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일반인 진술녹화	팀원	76	121.97	26.982	3.095
	팀장	23	117.39	49.472	10.316

다만 t-검증에서 <표 12>를 통해 보듯이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즉 유의확률 p-value가 .001로서 $\alpha = .05$ 에서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다.

등분산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test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t-value가 .425, p-value가 .674로 나타나 $\alpha = .05$ 에서 집단 간 평균에 동일성이 있다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직위별 평균 (소요시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가설은 채택될 수 없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조사업무가 피해자 유형별로 상이한 평균 소요시간을 갖지만 각 유형 내에서는 조사대상(경찰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집단(직위)에 관계없이 전체 원스톱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소요시간 평균치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2> 원스톱 직위별 피해자조사(일반인 진술녹화)에 대한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 가정	12.763	.001	.576	97	.566	4.582	7.957	-11.211	20.376
등분산 가정하지 않음			.425	26.077	.674	4.582	10.770	-17.552	26.717

경찰관의 팀내 직위 외에 원스톱센터 근무 경력에 따라서도 소요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원스톱센터 경찰관들의 근무경력에 앞선 <표 8>에서 이미 보았듯이 6개월 미만(25명), 6개월 이상~1년 미만(17명), 1년 이상~2년 미만(10명), 2년 이상~3년 미만(19명), 3년 이상 장기근무자(29명) 등 5개 집단으로 나누어졌으며, 이들 경찰관(100명)들의 5개 유형의 피해자조사 답변에서 각 항목별로 1~6명 사이의 결측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일반인피해자조사(99명), 장애피해자(97명), 아동피해자(98명), 장애아동피해자(94명), 비녹화조사(97명) 등으로 관측되었다.

우선 <표 13>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각 유형별 합계에 나타난 평균값은 일반인 120.91분, 아동 140.20분 등으로 이미 <표 9>에서 보여준 유형별 평균값과 동일하다. 그리고 각 유형 내 근무경력 집단의 평균값들은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일반인피해자조사의 소요시간 평균을 보면 6개월 미만(N=24, \bar{h} =117.50분), 6개월 이상~1년 미만(N=17, \bar{h} =116.47분), 1년 이상~2년 미만(N=10, \bar{h} =114.00분), 2년 이상~3년 미만(N=19, \bar{h} =120.00분),

3년 이상 장기근무자(N=29, \bar{h} =129.31분) 등으로 일반인피해자조사의 전체 평균 120.91분과 차이가 최대 약 8분에 불과하다.

<표 13> 원스톱 근무경력별 피해자조사에 대한 기술통계량

	N	평균 (분)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 값	최대 값	
					하한값	상한값			
일반인	6개월미만	24	117.50	33.002	6.737	103.56	131.44	60	180
	6개월-1년미만	17	116.47	25.725	6.239	103.24	129.70	60	180
	1년-2년미만	10	114.00	34.059	10.770	89.64	138.36	60	180
	2년-3년미만	19	120.00	28.284	6.489	106.37	133.63	60	180
	3년이상	29	129.31	40.172	7.460	114.03	144.59	60	240
	합계	99	120.91	33.323	3.349	114.26	127.56	60	240
아동	6개월미만	24	150.00	43.339	8.847	131.70	168.30	120	240
	6개월-1년미만	16	131.25	32.634	8.159	113.86	148.64	120	240
	1년-2년미만	10	150.00	42.426	13.416	119.65	180.35	120	240
	2년-3년미만	19	132.63	25.131	5.766	120.52	144.74	120	180
	3년이상	29	138.62	45.648	8.477	121.26	155.98	60	300
	합계	98	140.20	39.428	3.983	132.30	148.11	60	300
장애자	6개월미만	24	160.00	42.118	8.597	142.22	177.78	120	240
	6개월-1년미만	16	142.50	37.148	9.287	122.71	162.29	120	240
	1년-2년미만	10	168.00	47.329	14.967	134.14	201.86	120	240
	2년-3년미만	18	150.00	30.870	7.276	134.65	165.35	120	180
	3년이상	29	163.45	50.446	9.368	144.26	182.64	120	300
	합계	97	157.11	42.816	4.347	148.48	165.74	120	300
장애아동	6개월미만	21	160.00	39.497	8.619	142.02	177.98	120	240
	6개월-1년미만	16	146.25	30.741	7.685	129.87	162.63	120	180
	1년-2년미만	10	180.00	40.000	12.649	151.39	208.61	120	240
	2년-3년미만	18	163.33	64.443	15.189	131.29	195.38	120	360
	3년이상	29	153.10	52.174	9.689	133.26	172.95	60	300
	합계	94	158.30	48.073	4.958	148.45	168.14	60	360
비능화조서	6개월미만	22	94.09	26.665	5.685	82.27	105.91	30	120
	6개월-1년미만	17	105.88	15.435	3.744	97.95	113.82	90	120
	1년-2년미만	10	96.00	30.984	9.798	73.84	118.16	60	120
	2년-3년미만	19	108.95	36.346	8.338	91.43	126.47	60	240
	3년이상	29	108.62	33.458	6.213	95.89	121.35	60	180
	합계	97	103.61	30.006	3.047	97.56	109.66	30	240

ANOVA(Analysis of variance) test는 분산이 같다는 가정에서 실시된다. 아래의 <표 14>에는 Levene 통계량을 이용하여 각 모집단 분산의 동질성에 대해 검증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일반인피해자조사의 경우, Levene 통계량(.945)에 따른 유의확률 p-value가 .437로 나타나

$\alpha=.05$ 에서 5개 근무경력 집단 모집단 분산이 모두 같다는 가설 ($H_0: \sigma_1^2 = \sigma_2^2 = \sigma_3^2 = \sigma_4^2 = \sigma_5^2$)을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다.

이 밖에도 장애피해자조사의 경우, p-value는 .621, 아동피해자조사 p-value= .060, 장애아동 p-value= .105, 비녹화조서 p-value= .289로 나타나 모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충족된다.

<표 14> 원스톱 근무경력별 피해자조사에 대한 등질성 검정

	Levene 통계량	df1	df2	유의확률
일반인피해자조사	.954	4	94	.437
아동피해자조사	2.349	4	93	.060
장애피해자조사	.661	4	92	.621
장애아동피해자조사	1.978	4	89	.105
비녹화조서	1.267	4	92	.289

아래의 <표 15>의 분산분석표에는 경찰관의 원스톱 근무경력별 피해자조사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 일반인피해자조사의 경우, $F= .701$, p-value= .593 로서 “ $H_0: \mu_1 = \mu_2 = \mu_3 = \mu_4 = \mu_5$ ” 는 $\alpha=.05$ 에서 기각하지 못한다. 즉 원스톱 근무경력 6개월 미만의 초임 경찰관 집단에서부터 3년 이상의 장기 근무경력자 집단까지 5개 집단 중 적어도 어느 두 집단 간 사건조사 평균 소요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인 외에 아동피해자조사의 경우에도, $F= .915$, p-value= .459 로서 역시 근무경력에 따라 평균 시간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한다.

장애피해자조사의 경우, $F = .935$, $p\text{-value} = .447$, 장애아동 $F = .897$, $p\text{-value} = .469$, 비녹화조서 $F = 1.095$, $p\text{-value} = .346$ 으로서 역시 근무경력에 따라 평균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채택할 수 없다.

<표 15> 근무경력별 피해자조사에 대한 분산분석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일반인 피해자	집단-간	3153.740	4	788.435	.701	.593
	집단-내	105664.442	94	1124.090		
	합계	108818.182	98			
아동 피해자	집단-간	5707.670	4	1426.917	.915	.459
	집단-내	145088.249	93	1560.089		
	합계	150795.918	97			
장애 피해자	집단-간	6876.580	4	1719.145	.935	.447
	집단-내	169115.172	92	1838.208		
	합계	175991.753	96			
장애아동 피해자	집단-간	8331.970	4	2082.992	.897	.469
	집단-내	206595.690	89	2321.300		
	합계	214927.660	93			
비녹화 조서	집단-간	3929.756	4	982.439	1.095	.364
	집단-내	82507.358	92	896.819		
	합계	86437.113	96			

위의 분산분석에서 각 집단간 평균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얼마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이를 알아보기 위한 follow-up test를 실시할 필요도 없다.

다만 집단 간에 셀 크기(사례 수)가 달라 Bonferroni 방법에 의한 사후검증(post hoc test)을 실시해 보았으나 역시 다중비교의 대부분

p-value= 1.000을 나타냈다(<표 15>).

이러한 사후비교 외에 근무경력별 근속 여부를 1년 기준으로 하고 그에 따라 양 집단간 차이를 대조(contrast)하는 사전적 계획 비교(planned comparison) 방식도 실시해보았으나(<표 16>). 확인된 것은 1년 미만 집단과 1년 이상 집단 간 평균 소요시간 차이가 -2.47분으로 1년 미만 집단이 조금 짧게 나타났다는 것과,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에서 그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뿐이었다($t=-.573$, $p\text{-value}= .568$).

<표 15> 근무경력별 피해자조사의 분산분석에 대한 사후검증(Bonferroni)

종속 변수	(I) 부서경력	(J) 부서경력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일반인피 해자조사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029	10.628	1.000	-29.52	31.58	
		1년이상-2년미만	3.500	12.619	1.000	-32.78	39.78	
		2년이상-3년미만	-2.500	10.296	1.000	-32.10	27.10	
		3년이상	-11.810	9.252	1.000	-38.41	14.79	
	6개월이상- 1년미만	6개월미만	-1.029	10.628	1.000	-31.58	29.52	
		1년이상-2년미만	2.471	13.362	1.000	-35.94	40.88	
		2년이상-3년미만	-3.529	11.193	1.000	-35.71	28.65	
		3년이상	-12.840	10.241	1.000	-42.28	16.60	
	1년이상-2 년미만	6개월미만	-3.500	12.619	1.000	-39.78	32.78	
		6개월이상-1년미만	-2.471	13.362	1.000	-40.88	35.94	
		2년이상-3년미만	-6.000	13.099	1.000	-43.66	31.66	
		3년이상	-15.310	12.295	1.000	-50.66	20.04	
	2년이상-3 년미만	6개월미만	2.500	10.296	1.000	-27.10	32.10	
		6개월이상-1년미만	3.529	11.193	1.000	-28.65	35.71	
		1년이상-2년미만	6.000	13.099	1.000	-31.66	43.66	
		3년이상	-9.310	9.896	1.000	-37.76	19.14	
	3년이상	6개월미만	11.810	9.252	1.000	-14.79	38.41	
		6개월이상-1년미만	12.840	10.241	1.000	-16.60	42.28	
		1년이상-2년미만	15.310	12.295	1.000	-20.04	50.66	
		2년이상-3년미만	9.310	9.896	1.000	-19.14	37.76	
	장애 피해자조 사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7.500	13.838	1.000	-22.30	57.30
			1년이상-2년미만	-8.000	16.137	1.000	-54.42	38.42
			2년이상-3년미만	10.000	13.368	1.000	-28.45	48.45
			3년이상	-3.448	11.831	1.000	-37.48	30.58
6개월이상- 1년미만		6개월미만	-17.500	13.838	1.000	-57.30	22.30	
		1년이상-2년미만	-25.500	17.283	1.000	-75.21	24.21	
		2년이상-3년미만	-7.500	14.731	1.000	-49.87	34.87	
		3년이상	-20.948	13.352	1.000	-59.35	17.46	
1년이상-2 년미만		6개월미만	8.000	16.137	1.000	-38.42	54.42	
		6개월이상-1년미만	25.500	17.283	1.000	-24.21	75.21	
		2년이상-3년미만	18.000	16.910	1.000	-30.64	66.64	
		3년이상	4.552	15.723	1.000	-40.67	49.78	
2년이상-3 년미만		6개월미만	-10.000	13.368	1.000	-48.45	28.45	
		6개월이상-1년미만	7.500	14.731	1.000	-34.87	49.87	
		1년이상-2년미만	-18.000	16.910	1.000	-66.64	30.64	
		3년이상	-13.448	12.865	1.000	-50.45	23.56	
3년이상		6개월미만	3.448	11.831	1.000	-30.58	37.48	
		6개월이상-1년미만	20.948	13.352	1.000	-17.46	59.35	
		1년이상-2년미만	-4.552	15.723	1.000	-49.78	40.67	
		2년이상-3년미만	13.448	12.865	1.000	-23.56	50.45	

아동피해 자조사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8.750	12.748	1.000	-17.91	55.41
		1년이상-2년미만	.000	14.866	1.000	-42.75	42.75
		2년이상-3년미만	17.368	12.129	1.000	-17.51	52.25
	6개월이상- 1년미만	3년이상	11.379	10.900	1.000	-19.96	42.72
		6개월미만	-18.750	12.748	1.000	-55.41	17.91
		1년이상-2년미만	-18.750	15.922	1.000	-64.53	27.03
	1년이상-2 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382	13.402	1.000	-39.92	37.16
		3년이상	-7.371	12.300	1.000	-42.74	28.00
		6개월미만	.000	14.866	1.000	-42.75	42.75
	2년이상-3 년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8.750	15.922	1.000	-27.03	64.53
		2년이상-3년미만	17.368	15.431	1.000	-27.00	61.74
		3년이상	11.379	14.485	1.000	-30.27	53.03
	3년이상	6개월미만	-17.368	12.129	1.000	-52.25	17.51
		6개월이상-1년미만	1.382	13.402	1.000	-37.16	39.92
		1년이상-2년미만	-17.368	15.431	1.000	-61.74	27.00
장애아동 피해자조 사	6개월미만	3년이상	-5.989	11.658	1.000	-39.51	27.53
		6개월미만	-11.379	10.900	1.000	-42.72	19.96
		6개월이상-1년미만	7.371	12.300	1.000	-28.00	42.74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11.379	14.485	1.000	-53.03	30.27
		2년이상-3년미만	5.989	11.658	1.000	-27.53	39.51
		6개월이상-1년미만	18.750	15.988	1.000	-32.27	59.77
	6개월미만	1년이상-2년미만	-20.000	18.511	1.000	-73.29	33.29
		2년이상-3년미만	-3.333	15.476	1.000	-47.88	41.22
		3년이상	6.897	13.805	1.000	-32.84	46.64
	6개월이상- 1년미만	6개월미만	-13.750	15.988	1.000	-59.77	32.27
		1년이상-2년미만	-33.750	19.422	.857	-89.66	22.16
		2년이상-3년미만	-17.083	16.554	1.000	-64.74	30.57
	1년이상-2 년미만	3년이상	-6.853	15.004	1.000	-50.05	36.34
		6개월미만	20.000	18.511	1.000	-33.29	73.29
		6개월이상-1년미만	33.750	19.422	.857	-22.16	89.66
2년이상-3 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6.667	19.002	1.000	-38.04	71.37	
	3년이상	26.897	17.668	1.000	-23.97	77.76	
	6개월미만	3.333	15.476	1.000	-41.22	47.88	
3년이상	6개월이상-1년미만	17.083	16.554	1.000	-30.57	64.74	
	1년이상-2년미만	-16.667	19.002	1.000	-71.37	38.04	
	3년이상	10.230	14.457	1.000	-31.39	51.85	
비녹화조 서	6개월미만	6개월미만	-6.897	13.805	1.000	-46.64	32.84
		6개월이상-1년미만	6.853	15.004	1.000	-36.34	50.05
		1년이상-2년미만	-26.897	17.668	1.000	-77.76	23.97
	6개월이상- 1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0.230	14.457	1.000	-51.85	31.39
		3년이상	-11.791	9.670	1.000	-39.61	16.02
		6개월미만	-1.909	11.421	1.000	-34.76	30.94
	6개월미만	1년이상-2년미만	-14.856	9.379	1.000	-41.83	12.12
		2년이상-3년미만	-14.530	8.467	.895	-38.88	9.82
		3년이상	11.791	9.670	1.000	-16.02	39.61
	6개월이상- 1년미만	6개월미만	9.882	11.935	1.000	-24.45	44.21
		1년이상-2년미만	-3.065	9.998	1.000	-31.82	25.69
		2년이상-3년미만	-2.738	9.148	1.000	-29.05	23.57
	1년이상-2 년미만	3년이상	1.909	11.421	1.000	-30.94	34.76
		6개월미만	-9.882	11.935	1.000	-44.21	24.45
		6개월이상-1년미만	-12.947	11.700	1.000	-46.60	20.70
2년이상-3 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12.621	10.982	1.000	-44.21	18.97	
	3년이상	14.856	9.379	1.000	-12.12	41.83	
	6개월미만	3.065	9.998	1.000	-25.69	31.82	
3년이상	6개월이상-1년미만	12.947	11.700	1.000	-20.70	46.60	
	1년이상-2년미만	.327	8.839	1.000	-25.10	25.75	
	2년이상-3년미만	14.530	8.467	.895	-9.82	38.88	
3년이상	6개월미만	2.738	9.148	1.000	-23.57	29.05	
	6개월이상-1년미만	12.621	10.982	1.000	-18.97	44.21	
	1년이상-2년미만	-327	8.839	1.000	-25.75	25.10	

<표 16> 근무경력별 일반인피해자조사의 대비검증 결과

원스톱 근무경력 (대비 계수)							
대비	6개월미만	6개월이상-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		
1	.3	.3	-.2	-.2	-.2		
대비 검증							
		대비	대비 값	표준오차	t	df	유의확률 (양측)
일반인 피해자	등분산 가정	1	-2.47	4.310	-.573	94	.568
	등분산 가정 없음	1	-2.47	4.017	-.615	61.726	.541

3. 수사지원 업무환경 분석

1) 조사업무 여건(물적 인프라)

업무환경으로는 우선 피해자 조사업무의 물리적 여건을 들 수 있으며 본 연구는 그 세부적인 범주로 조사 시설(facilities), 장비(equipment), 전산시스템(computer system) 등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적 인프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시설은 진술녹화실, 상담실, 보호자대기실과 같은 주로 사무실

(office) 업무 공간에 관한 것이며, 조사장비는 영상 및 녹음 장비 등 조사시설 내에 피해자 조사를 위해 구비된 장비에 대한 것이다. 전산시스템은 현행 여가부의 표준행정시스템 또는 경찰 117형태의 전산망 활용 개선 등에 대한 것이다.

전국의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 100명에게 위의 업무 여건 중에서 우선 사무실 공간에 관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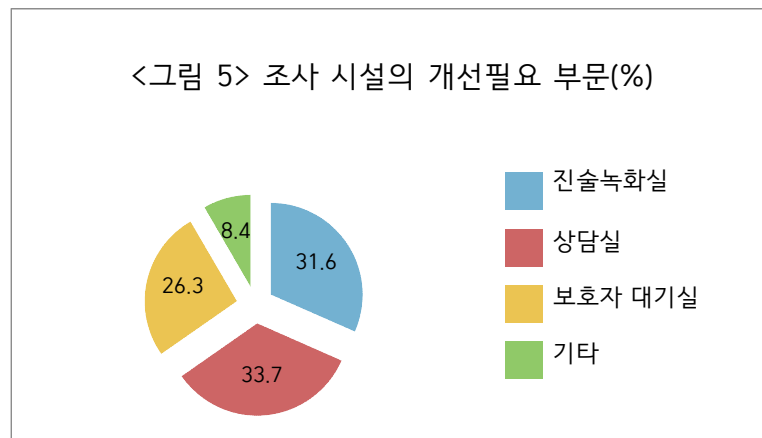
전체 100명중 95명이 조사 시설(업무 공간)의 개선 필요성을 느꼈으며, 개선을 요구한 답변자들은 조사 시설 중에서도 특히 상담실의 확충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32명). 다음으로 진술녹화실의 확충을 들었으며(30명), 보호자를 위한 대기시설도 25명이 그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였다(<표 17>).

이밖에도 참관인실(모니터실)이 비노출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3명), 장시간 조사와 피로도를 고려한 녹화실 내부환경 개선 의견(2명), 대기 피해자가 많을 경우 독립 공간(피해자 대기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1명), 청소년 대상의 별도 녹화실 설치 의견, 환경개선(1명), 조서 작성을 위한 수사실 설치 의견(1명) 등이 기타 의견(8명)으로 제시되었다.

조사시설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들 가운데 각각 약 1/3이 상담실과 진술녹화실의 개선을 지적한데서 보듯이 우선 상담실과 녹화실의 면적확대 또는 별개 공간 추가 설치(복수 공간 설치)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표 17> 조사 시설의 개선필요 부문

N=100명	필요 부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개선필요)	진술녹화실	30	30.0	31.6
	상담실	32	32.0	33.7
	보호자 대기실	25	25.0	26.3
	기타	8	8.0	8.4
	합계	95	95.0	100.0
	결측	5	5.0	
	총계	100	100.0	



조사 장비에 관해서는 전체 100명중 94명이 개선 필요성을 느꼈으며, 개선을 요구한 답변자들은 조사 장비 가운데서 영상과 녹음 장비에서 같은 비중으로 개선을 지적하였다(각각 41명). 또한 진술녹화실과 모니터실 간 방음장치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6명)도 있었다(<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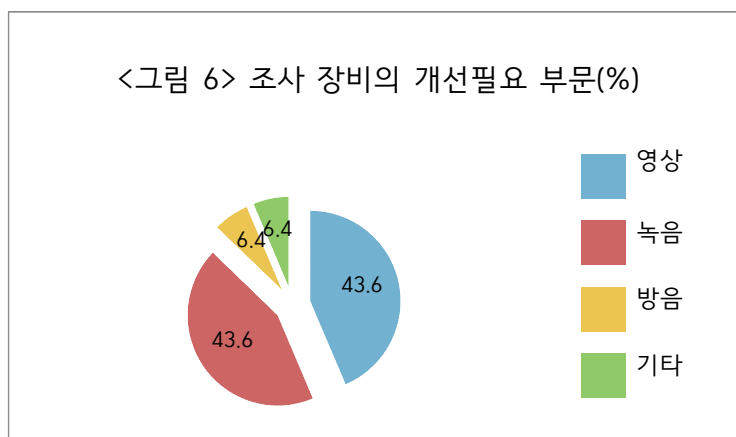
이밖에도 컴퓨터·책상·의자 등 조사사무장비 개선 의견(3명), 환기장치 개선 의견(1명), 미조사시 면담과정에서의 녹음녹화장비 도입 의견(1

명), 고장 영상녹음장치에 대한 신속한 보수처리(1명) 등이 기타 의견(12명)으로 제시되었다.

소수 의견이지만 진술녹화실과 모니터실 간 방음장치 개선 의견(6명)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선 조사시설 개선의 기타 의견에서 모니터실이 비노출 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3명)과도 관계되므로, 향후 진술녹화실과 참관인실에 대한 비노출 차단 설비가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8> 조사 장비의 개선필요 부문

N=100명	필요 부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개선필요)	영상	41	41.0	43.6
	녹음	41	41.0	43.6
	방음	6	6.0	6.4
	기타	6	6.0	6.4
	합계	94	94.0	100.0
결측		6	6.0	
총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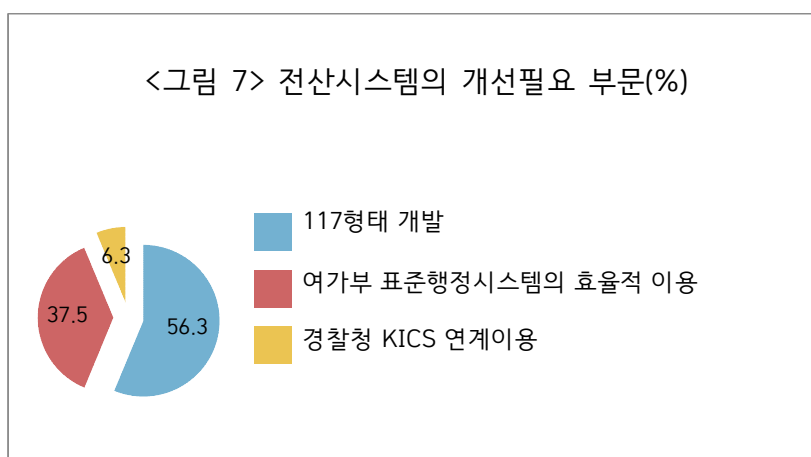
전산시스템에 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0명중 96명이 개선 필요성을 느꼈으며,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들은 전산시스템 중에서도 특히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117 형태의 시스템 개발을 선호하였다(54명). 다음으로 는 현재 사용하는 여가부 표준행정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36명).

이밖에 기타 의견으로 피해자조사 결과에 대한 입력 등 수사지원팀 업무가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키스(KICS, Korea Integrated Criminal System)를 통해 연계되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을 요구하였다.

<표 19> 전산시스템의 개선필요 및 부문

N=100명	필요 부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개선필요)	117형태 개발	54	54.0	56.3
	표준행정시스템의 효율적 이용	36	36.0	37.5
	경찰청 KICS 연계이용	6	6.0	6.3
	합계	96	96.0	100.0
결측		4	4.0	
총계		100	100.0	

<그림 7> 전산시스템의 개선필요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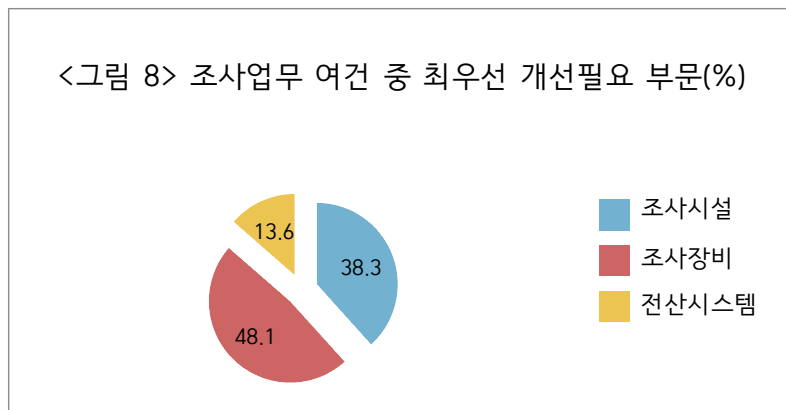
원스톱 근무 경찰관 100명에게 이상 각 부분별로 개선 필요성 여부 및 세부 개선점에 대해 답변을 구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상기 세 부분의 업무 여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질문하였다(<표 20>).

설문 결과 전체 100명 중 81명이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업무 여건(인프라) 부분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조사장비의 개선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39명). 다음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부분은 조사실, 상담실 등 조사시설(31명)이었으며, 전산시스템 개선은 11명으로 나타났다.

<표 20> 조사업무 여건 중 최우선 개선필요 부문

N=100명	필요 부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개선필요)	조사시설	31	31.0	38.3
	조사장비	39	39.0	48.1
	전산시스템	11	11.0	13.6
	합계	81	81.0	100.0
	결측	19	19.0	
	총계	100	100.0	

<그림 8> 조사업무 여건 중 최우선 개선필요 부문(%)



조사 여건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들 81명 중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비율이 조사 장비의 개선을 지적한데서 보듯이(39명, 48.1%), 조사 여건 개선을 설계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 이 부분의 개선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근무 형태 및 대리외상 경험

경찰관들의 업무환경은 앞선 공간적, 물리적 근무 여건(물적 인프라) 속에서 시간적으로는 24시간 연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약조건 하에 있다. 그러나 전국에 설치된 25개 원스톱센터 내의 수사지원팀은 팀장 포함해서 많아야 5명 적게는 불과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수의 인원이 주야간 업무의 단절 없이 수사지원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전국 25개소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경찰관들의 24시간 근무 형태를 팀장을 포함한 교대근무의 실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전국 원스톱센터의 교대근무 현황

	현원	교대근무 형태
서울경찰병원	5	4교대, 팀장 포함 팀원 주야비휴
서울보라매병원	5	4교대, 팀장 일근 팀원 주야비휴
서울대병원	5	4교대, 팀장 일근 팀원 주야비휴
부산의료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주주주야비야비
부산 동아대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주주주야비야비
인천의료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당비휴
인천부평 성모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당비휴
대구의료원	5	4교대, 팀장 일근 팀원 주야비휴
광주 조선대병원	5	4교대, 팀장 일근 팀원 주야비휴
대전 충남대병원	4	4교대, 팀장 포함 팀원 주야비휴
울산병원	4	4교대, 팀장 포함 팀원 주야비휴
의정부의료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주주주야비야비
안산 한도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주주주야비야비
수원 아주대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주주주야비야비
강릉 동인병원	3	3교대, 팀장 포함 팀원 당비휴
춘천 강원대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당비휴
청주의료원	4	4교대 팀장 포함 팀원 주야비휴
천안 단국대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주주주야비야비
진주 전북대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당비휴
목포 중앙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당비휴
순천 성가톨릭병원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당비휴
안동의료원	3	3교대, 팀장 포함 팀원 당비휴
포항 선린병원	3	3교대, 팀장 포함 팀원 당비휴
마산의료원	3	3교대, 팀장 없음 팀원 당비휴
제주 한라병원	3	3교대, 팀장 포함 팀원 당비휴
합계 25개소	100	

전국 25개 원스톱센터 중에서 근무 경찰이 5명으로 비교적 인원이 많은 서울 2곳과 대구, 광주 등 4곳의 수사지원팀은 4교대(팀장 일근, 팀원 주야비휴)의 교대근무 형태를 갖고 있고 서울 경찰병원(5명) 및 근무 인원이 4명인 대전, 울산, 청주 등 4곳도 역시 4교대(팀장 포함 주야비휴)의 근무형태를 갖고 있다.

근무 인원이 4명인 나머지 12곳은 변형 3교대(팀장 일근, 팀원 주주 주야비야비 또는 당비휴)로서 이 근무 유형이 전체 원스톱의 절반에 가까운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근무 인원이 3명인 강릉, 안동, 포항, 마산, 제주 5곳은 3교대(팀장 포함 또는 팀장이 없이 3명 전원 당비휴)로서 운영된다(<표 22>).

<표 22> 원스톱센터의 교대근무 유형

연번	유형	개소	총 인원
1	4교대 팀장 일근, 팀원 주야비휴	4개소 (1개소당 5명 근무)	20
2	4교대 팀장 포함, 팀원 주야비휴	4개소 (1개소당 4명 근무) 단, 서울경찰병원은 5명 근무	17
3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주주주야비야비	6개소 (1개소당 4명 근무)	24
4	3교대(변형) 팀장 일근, 팀원 당비휴	6개소 (1개소당 4명 근무)	24
5	3교대 팀장 포함, 팀원 당비휴	4개소 (1개소당 3명 근무)	12
6	3교대 팀장 없음, 팀원 당비휴	1개소 (1개소당 3명 근무)	3
	합계	25개소	100

원스톱센터 경찰관들은 소수의 근무인원이 현재의 근무형태에 따라 24시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심각한 성폭력 사건 등 외상사건(traumatic event)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 이처럼 외상사건에 상시 노출되는 경찰관들은 피해자 진술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넘어서 이른바 이차적인 외상스트레스 장애(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STSD)로 이어지는 대리외상(vicarious trauma)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원스톱센터 경찰관들에게 피해자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심각한 심리적 충격(대리외상)의 유무와 외상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100명 중 74명의 경찰관이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외상사건에 대한 고통의 정도에 대해 약간의 스트레스만을 받은 경우 26명, 보통의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20명, 상당한 스트레스 25명으로 나타났으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외상스트레스를 겪은 경우도 3명으로 나타났다.

<표 23> 대리외상 경험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

N=100명	수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대리외상 경험있음)	약간	26	26.0	35.1	35.1
	보통	20	20.0	27.0	62.2
	상당	25	25.0	33.8	95.9
	극심	3	3.0	4.1	100.0
	합계	74	74.0	100.0	
결측		26	26.0		
총계		100	100.0		

이상에서 볼 때 전체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의 3/4이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으며(74%), 또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들 중 약 2/3이 보통 이상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64.9%).

3) 원스톱센터 內 기능 간 애로와 원인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경찰관은 앞서 본바와 같이 제약된 물적 인프라와 소수 인원으로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으며, 원스톱센터 內 의료와 상담 등 여러 다른 기능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4시간 지속되는 근무와 긴급한 사례 접수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지원기능 간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에게 여타 기능들과의 애로가 있다면 어느 기능, 어떤 이유인지를 질문하였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00명중 69명이 업무수행 중 여타 지원기능과 애로가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의료지원 기능과의 애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2명).

의료지원 기능 다음으로 상담지원 기능과 애로가 있다고 답한 경찰관이 17명, 심리치료지원 기능과의 애로 8명, 행정지원 기능과의 애로 2명 순이었다.

<표 24> 원스톱센터 내 수사지원팀과 여타 기능 간 애로

	애로 기능(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애로 있음)	의료지원	42	42.0	60.9
	상담지원	17	17.0	24.6
	심리치료지원	8	8.0	11.6
	행정지원	2	2.0	2.9
	합계	69	69.0	100.0
	결측	31	31.0	
	합계	100	100.0	

애로가 있다고 답한 경찰관 69명은 기능 간 애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25명이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는 기능 구성원 간 인식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표 25>).

기능 간 인식 차이에서 오는 애로는 팀별로 각기 상이한 업무 수행 상호 조적 내재적인 성격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매우 심각한 것은 인력 부족에서 발생하는 애로이다.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는 모두 14명이 답하였으며 특히 간호사(7명)와 심리치료 인력(7명) 부족에 집중되었다.

특히 주말 및 야간에는 경찰관과 상담사만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팀이 없기 때문에 긴급한 피해자가 장시간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스톱센터 내 상주하는 심리치료사가 없어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타 기관에 연계해야 한다든가, 임상심리사 등을 상근 인력으로 두고자 하여도 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리지원 인력 부족에 대한 애로점도 토로되었다.

이밖에 기타 애로가 발생하는 이유로 피해자 의료 및 수사지원을 위한 병원 진료과목(전문의)의 부족(1명), 여가부와 경찰 간 예산운용의 문제

(2명) 등도 제기되었다.

<표 25> 원스톱센터 內 기능 간 애로 이유

N=100명	애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애로 있음)	짚은 직원교체	7	7.0	10.1
	전문성 부족	4	4.0	5.8
	이해 부족	25	25.0	36.2
	불명확한 업무분장	2	2.0	2.9
	병원측 협조 부족	10	10.0	14.5
	예산지원 부족	4	4.0	5.8
	전담인력 부족	14	14.0	20.3
	기타	3	3.0	3.3
	합계	69	69.0	100.0
결측		31	31.0	
합계		100	100.0	

4) 원스톱센터 外 경찰기능 간 애로와 원인

앞서 본 원스톱센터 지원기능 간의 애로는 같은 업무 공간 내에 있는 의료, 상담 등 여타 지원팀들과의 업무수행상 애로 사항이며, 원스톱센터 外 경찰기능 간 애로는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과 업무 협조 관계를 갖고 있는 경찰관서 유관 기능(부서)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로점이다.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은 피해자 조사 후 사건 인계와 각종 평가서 및 보고서 등 타 경찰기능과의 업무협조 과정에서 지역 경찰관서의 수사, 피해자보호 기능 등 여타 일선 경찰기능과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에게 여타 경찰기능들과의 애로가 있다면 어느

기능, 어떤 이유인지를 질문하였다.

전체 100명중 80명이 업무수행 중 타 경찰기능과 애로가 있었다고 답하였다(<표 26>).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 전담조사팀, 피해자 보호지원관 등 피해자 보호 기능과의 애로는 없었고, 그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많은 업무 관계를 갖고 있는 경찰서의 형사팀, 성폭력 전담수사팀 또는 지구대 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79명).

<표 26> 원스톱센터 외 경찰기능과의 애로

N=100명	애로 부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애로 있음)	지방청 특별수사대	1	1.0	1.3
	경찰서 (형사팀, 전담수사팀, 지구대)	79	79.0	98.8
	합계	80	80.0	100.0
결측		20	20.0	
합계		100	100.0	

애로가 있다고 답한 경찰관 80명은 경찰기능 간 애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56명이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는 기능 간 인식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표 27>).

경찰기능 간 인식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와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간에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피해자지원 또는 피의자검거 위주의 상이한 업무에 오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원스톱센터 근무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일선 수사부서의 수사관들이 피해자 보다는 사건 위주로 일을 하고 나아가 사건 실적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기타 애로가 발생하는 이유로서, 원스톱센터로 피해자의 무분

별한 연계(2명), 사건 담당자의 지정 지연(1명) 등도 제기되었다.

<표 27> 원스톱센터 외 경찰기능 간 애로 이유

N=100명	애로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효 (애로 있음)	찾은 직원교체	3	3.8	3.8
	전문성 부족	6	6.0	7.5
	이해부족	57	57.0	71.3
	불명확한 업무분장	9	9.0	11.3
	기타	5	5.0	6.3
	합계	80	80.0	100.0
결측		20	20.0	
합계		100	100.0	

5)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업무 손실

수사지원팀은 원스톱센터 내외 여러 기능들과 소수의 인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지속해야하는 업무환경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나마 경찰관 교육과정 입교와 연가 사용 등으로 불가피한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관의 기본근무시간과 연간 적정 업무량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실시된 교육·연가 시간이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에 의한 업무 손실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원스톱센터 경찰관에게 최근 2013년 1년간 직무교육과 개인연가 등 업무 손실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전체 100명 중 84명이 교육과 연가 등이 있었다고 답하였다(<표 28>). 교육과 연가 사용이 전혀 없었던 경우

도 있으나(5명) 최장 38일간 교육·연가가 있었던 경우도 있다(1명).

<표 28>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업무 손실

손실일수(교육·연가)	인원(명) N=100명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0	5	5.0	6.0	6.0
1	8	8.0	9.5	15.5
2	6	6.0	7.1	22.6
3	5	5.0	6.0	28.6
4	5	5.0	6.0	34.5
5	13	13.0	15.5	50.0
6	2	2.0	2.4	52.4
7	4	4.0	4.8	57.1
8	3	3.0	3.6	60.7
9	2	2.0	2.4	63.1
10	11	11.0	13.1	76.2
11	4	4.0	4.8	81.0
12	2	2.0	2.4	83.3
13	1	1.0	1.2	84.5
14	2	2.0	2.4	86.9
15	2	2.0	2.4	89.3
16	1	1.0	1.2	90.5
17	1	1.0	1.2	91.7
18	3	3.0	3.6	95.2
21	1	1.0	1.2	96.4
22	2	2.0	2.4	98.8
38	1	1.0	1.2	100.0
합계	84	84.0	100.0	
결측	16	16.0		
합계	100	100.0		

응답한 84명 중 가장 많은 13명의 인원이 5일의 교육·연가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11명이 10일의 교육·연가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 인원의 대다수인 64명(76.2%)이 10일 이하의 교육·연가 일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상의 원스톱센터 경찰관에 대한 교육·연가 실시 조사는 최근 1년간(2013)의 원스톱센터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센터 신규 전입자의 경우는 조사에 난점이 있다. 실제 응답자들 중에는 1년 미만 최근 수개월 내 원스톱센터로 전입하여 답변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위의 표에서 보듯이 결측이 다수 발생하였다(결측 16건).

합리적인 업무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응답자 중 최근 신규 전입으로 원스톱센터와 업무 환경이 달랐던 경우 교육·연가를 업무 손실 산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84명 응답자 중 원스톱센터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응답자들을 추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위의 <표 28>로부터 조정된 업무 손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6개월 이상 근무자는 71명이었으며 이들이 실시한 각각의 교육·연가로부터 구한 연간 총 손실 일수는 579일이다. 또한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의 1인당 평균 손실일은 연간 8.15일로 나타났다.

<표 29>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업무(조정) 손실

손실일 (교육·연가)	인원 (명)	손실 계 (손실일 × 인원)	1인당 평균 손실일
0	1	0	
1	6	6	
2	6	12	
3	4	12	
4	5	20	
5	10	50	
6	2	12	
7	4	28	
8	3	24	
9	2	18	
10	10	100	-
11	3	33	
12	2	24	
13	1	13	
14	2	28	
15	2	30	
16	1	16	
17	1	17	
18	3	54	
22	2	44	
38	1	38	
합계	71	579	8.15

주: 1) 원스톱 근무경력 6개월 미만의 경찰관은 제외함.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의 업무 손실은 교육·연가 외에도, 근무 중 접

한 비정상적인 상황과 그로부터 입은 외상 충격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전체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의 3/4이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나아가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의 약 2/3이 보통 이상에부터 극심한 수준에 이르는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근무 중 외상충격 치료와 정상 회복을 위하여 주기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그 선호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였다(<표 30>).

<표 30>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치유 프로그램

	선호 프로그램 종류	인원 (명)	퍼센트	유효 퍼센트	연간 필요일수 (종류×인원)
유효	분기별 상담 1회(반일) =연간 2일	16	16.0	16.3	32
	반기별 심층프로그램 1회(1일)=연간 2일	71	71.0	72.4	142
	기타	11	11.0	11.2	
	분기별 상담 1회(반일) & 반기별 심층프로그램 1회(1일)	3			12
	반기별 심층프로그램(2-3일)	4			20
	반기별 2박3일 심층프로그램	1			6
	분기별 상담 1회(반일) & 연간 심층프로그램 1회(1일)	1			3
	소진방지워크숍	1			2
	2개월에 1회 공연체험관람 등 휴식(반일)	1			6
	합계	98	98.0	100.0	223 (1인평균 2.3일)
	결측	2	2.0		
	합계	100	100.0		

조사 결과 총 98명의 경찰관이 상담 또는 심층적 치유 프로그램 실시를 요구하였다. 또 분기별 상담 프로그램(1회당 반일)과 반기별 심층 프로그램(1회당 1일) 가운데, 단순한 상담 프로그램 형태를 희망하기(16명) 보다는 반기별로 이루어지는 심층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선호하였다(71명).¹²⁾

이밖에도 상담에 심층 프로그램을 같이 실시하기를 원하는 경우(3명), 반기별 심층 프로그램을 2-3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경우(4명), 반기별 2박3일 심층 프로그램(1명)과 소진방지 워크숍(1명) 요구 등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경찰관들은 단순한 상담 형식 보다 종합적이면서도 집중적, 전문적으로 심화된 심층적 치유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업무 공백 및 대체 근무자의 업무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것은 결국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의 적정 업무량 모색과 수사지원팀 증원 요청으로 귀결된다.

12) 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2014년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계획 내 성폭력 분야 세부추진과제의 하나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정착 및 운영 내실화”를 신규로 설정하고, 그 주요 추진 항목으로 성폭력 수사요원 상담 프로그램 마련(4월), 힐링캠프 개최(12월)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정상적인 외상사건에 노출되어 겪는 정신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보라매병원 경찰트라우마센터의 협조를 얻어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경찰관 감성치료를 위한 ‘힐링캠프’ 정례 개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4장 표준 직무모형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

제1절 표준 직무모형의 개발

1. 1인당/팀별 적정 업무량의 검토

원스톱센터의 표준 직무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발생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업무량 측정과 함께 24시간 근무 등 직무 특성 및 업무손실 등이 반영된 수사지원팀의 인력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원스톱센터 업무프로세스에서 근무 경찰관의 사건 처리 소요시간과 근무가능일수를 고려한 1인당 적정 업무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경찰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은 조사기초 준비에서부터 본조사, 조사 후 조치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 접수된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이 연간 가용한 기본 근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이론 모형(basic model)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경찰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 식 (1-1)

단,

L_y = 1일 기본 근무시간(L_n) \times 연간 기본 근무일수(L_d),

$\bar{h} = \frac{\sum h_i}{N}$, 여기서 h_i = 개별 사건 i 의 처리 소요시간, N =전체 사건 수.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나타내는 위의 모형은 수사지원팀 경찰관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기본 근무시간을 1건당 평균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눈 모형으로서 일반인과 아동, 장애인 등 피해자 유형, 또는 녹화와 비녹화 등 조사방식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이론적 업무추정량 모형이다.

그러나 업무 현실에서는 업무의 난이도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 유형을 고려하여 위의 1인당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을 다시 구성하면,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 식 (1-2)

단, 여기서 \bar{h} 는 사건 유형별 차이가 고려되어

$\bar{h} = \frac{\sum(\text{유형별 건수} \times \text{유형별 평균 소요시간})}{\sum \text{유형별 건수}}$

로서 산출된다.

위의 식에서 \bar{h} 을 다시 써보면, $\bar{h} = \frac{\sum n_i \bar{h}_i}{\sum n_i}$,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bar{h}_i = 유형 i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

위 모형은 식 (1-1)의 기본 모형과 기본 산식에서 동일하다. ($W_n = L_y \div \bar{h}$) 그러나 \bar{h} 의 산출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본 모형의 식 (1-1)은 \bar{h} 을 구할 때, 개별 사건들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단순히 모두 더하고 ($\sum h_i$) 이를 전체 사건(N)으로 나눈다($\bar{h} = \frac{\sum h_i}{N}$). 반면 식 (1-2)에서의 \bar{h} 는 사건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기 상이한 사건 유형별 소요시간을 적용하여 구해진다.¹³⁾

2) 수사지원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개인별 적정 업무량과 같이 각 지역(지방청)에 설치된 원스톱센터의 경우에도 수사지원팀별 인원 수 및 팀의 연간 기본근무시간, 사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 업무량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즉, 원스톱센터 경찰관 정원(L_p)이 l 명 ($L_p=l$)인 P지역에 A병원 수사지원팀 (팀원 수= m 명), B병원 수사지원팀 (팀원 수= $l-m$ 명)으로 두 곳이 설치되었을 경우

A병원 수사지원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sum_{i=1, j=1}^{i=k, j=m} n_{ij}$ 이다.

13) 기본모형의 식 (1-2)는 상이한 업무량 또는 업무 난이도가 반영된 사건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적정 업무량이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적정 업무량 기본모형의 구축과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pp. 34-35;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pp. 124-125;

단,

$$\text{제약조건은 } \sum_{i=1, j=1}^{i=k, j=m} n_{ij} \bar{h}_i \leq mL_y,$$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j = 조사관, n_{ij} = 조사관 j 가 담당한 유형 i 사건의 처리 건수, mL_y = A병원 수사지원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마찬가지로 B병원 수사지원팀은 $\sum_{i=1, j=m+1}^{i=k, j=l} n_{ij}$ 이다.

$$\text{단, 제약조건은 } \sum_{i=1, j=m+1}^{i=k, j=l} n_{ij} \bar{h}_i \leq (l-m)L_y,$$

여기서 $(l-m)L_y$ = B병원 수사지원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예컨대, 원스톱센터 경찰관 정원이 9명 ($L_p = 9$)인 P지역에서 수사지원팀 전체 인원이 5명($j = 5$)인 A병원 원스톱센터가 6개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여 운영될 경우,

A병원 수사지원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sum_{i=1, j=1}^{i=6, j=5} n_{ij}$ 이다.

$$\text{단, 제약조건은 } \sum_{i=1, j=1}^{i=6, j=5} n_{ij} \bar{h}_i \leq 5L_y \text{ 이다}$$

여기서 $5L_y$ = A병원 수사지원팀(5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또한,

B병원 수사지원팀 적정업무량(건수)은 $\sum_{i=1, j=6}^{i=6, j=9} n_{ij}$.

단, 제약조건은
$$\sum_{i=1, j=6}^{i=6, j=9} n_{ij} \bar{h}_i \leq 4L_y,$$

여기서 $4L_y =$ B병원 수사지원팀(4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3) 적정 업무량과 업무 배당 준칙

극히 소수의 경찰관들이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조건 아래서 팀원 간 형평성을 갖는 사건 배정 또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정 준칙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접수된 사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사건 유형에 따른 난이도를 고려하여 사건을 수사지원팀 팀원들에게 균등 배당한다.

$$\sum n_{ia} \bar{h}_i = \sum n_{ib} \bar{h}_i \leq 1 \text{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즉 수사지원팀 내 경찰관(j)으로 a, b가 근무할 경우, 경찰관 간에 유형별 평균처리 소요시간(\bar{h}_i)을 고려한 업무량이 같도록 배당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별 처리소요시간의 합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 원스톱센터별 사건배당은 현재의 운영체계 아래서는 매우 어려우나 사건 처리 업무량의 팀간 장기적인 형평성 추구하고 인력 재배치 시각에서 본다면, 위의 수사지원팀별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의 제약조건

$$\sum_{i=1, j=1}^{i=k, j=m} n_{ij} \bar{h}_i \leq mL_y \text{ 을 만족하는 업무량 분담 기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⁴⁾

2. 표준 직무모형

1)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안: 기초 모형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표준 직무모형 개발에는 무엇보다 그 인력 표준안이 결정되어야 하는바, 필요인력의 산출을 위한 인력표준안 설계에는 앞서 적정 업무량 모형에서 적용되었던 1인당 연간 근무시간(L_y),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등의 개념과 기본 식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예컨대 D(대구)지역 A병원(대구의료원)에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경찰관 인원($L_{D(A)}$)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_{D(A)} = D\text{지역 } A \text{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 (H_{D(A)}) \div 1\text{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text{ -----식 (2-1)}$$

$$\text{단, } H_{D(A)} = \text{사건수}(N_{D(A)}) \times 1\text{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위의 모형에 따라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필요인력($L_{D(A)=\text{대구의료원 수사지원팀}}$)을 산출해 보면, 우선 대구의료원 원스톱

14) 실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은 소수인원의 24시간 교대근무 특성상, 유형별 사건 배당을 떠나 진술녹화(건수) 등 세부업무 자체가 균등 배분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경찰관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있다. 업무 편중이 빈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여건일 경우에는, 아동/장애피해자 조사 등 어려운 진술녹화 업무를 누적하여 담당할 경찰관에게 수당, 휴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센터 사건수($N_{D(A)}$)는 지난 2013년 총 930건(피해자조사 기준)이며, 그 중 진술녹화가 761건, 비녹화조사(=피해자조사-진술녹화)가 169건, 증거채취가 261건이었다.

<표 31> 원스톱센터별 피해자 지원 조치 건수(2013년)

구분	총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자 조서	전문가 참여
총계	93,499	49,097	17,174	4,597	8,202	11,720	2,709
서울							
경찰병원	5,332	2,327	1,511	439	302	677	76
보라매병원	5,234	2,270	1,342	356	423	712	131
서울대병원	5,078	2,363	1,216	214	408	705	172
부산							
부산의료원	772	271	197	48	115	119	22
동아대병원	6,134	3,361	1,333	159	502	640	139
인천							
인천의료원	4,160	1,606	744	160	746	794	110
성모병원	2,047	922	162	73	239	599	52
대구							
대구의료원	5,842	2,601	1,170	261	761	930	119
광주							
조선대병원	6,963	3,684	1,377	251	624	818	209
대전							
충남대병원	4,087	2,156	529	474	388	422	118
울산							
울산병원	3,064	1,793	540	135	184	316	96
경기							
의정부병원	3,577	2,163	620	116	257	313	108
안산한도	1,434	671	431	89	86	111	46
아주대병원	8,970	5,443	1,732	332	592	606	265
강원							
강릉동인병원	2,515	1,778	292	92	92	220	41
강원대병원	1,892	894	455	162	134	174	73
충북							
청주의료원	3,358	2,059	468	190	168	388	85
충남							
단국대병원	2,760	1,393	536	109	245	322	155
전북							
전북대병원	2,969	1,552	156	141	327	641	152
전남							
목포중앙병원	1,332	476	159	60	253	294	90
성가톨릭병원	1,703	741	237	57	299	286	83
경북							
안동의료원	2,616	1,724	270	84	172	296	70
포항선린병원	4,018	2,945	461	105	148	282	77
경남							
마산의료원	4,427	2,268	815	148	430	644	122
제주							
한라병원	3,215	1,636	421	342	307	411	98

자료: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원스톱센터 운영실적”, 2008-2013 각년도.

주: 1) 아주대병원 통계는 전국 취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어, 필자가 원포 자료를 구하여 사용함. 따라서 경찰청이 사후 취합한 <표 5>의 총량치와 본 연구의 통계 총량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위의 표 항목별 조치 건수들에서 보듯이 현실에서는 모든 사건에서 증거채취(T)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 진술녹화사건(V)과 비녹화조사(non-V) 사건이 다르다. 따라서 센터 전체의 업무량 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필요 경찰 인원($L_{D(A)}$) 측정에서는 (증거채취가 제외된) 녹화조사와 비녹화조사의 평균 업무량을 구분하고, 아울러 증거채취가 별도로 산입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위 식 (2-1)을 다시 쓰면,

$$L_{D(A)} = D\text{지역 } A \text{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 (H_{D(A)}) \div 1\text{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text{ -----식 (2-2)}$$

단, $H_{D(A)} = \text{진술녹화사건수}(N_{D(A, V)}) \times \text{진술녹화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overline{h}_v) + \text{비녹화사건수}(N_{D(A, non-V)}) \times \text{비녹화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overline{h}_{non-V}) + \text{증거채취건수}(N_{D(A, T)}) \times \text{증거채취 1건당 평균 소요시간}(\overline{h}_t)$

이처럼 진술녹화와 비녹화 사건을 구분하고 증거채취(T)의 소요시간($\overline{h}_t=113.94$ 분)이 제외된 세부업무프로세스 평균 소요시간을 보면 ① 조사 前 준비업무 192.77분, ② 진술녹화 조사업무 144.13분(일반/아동/장애자 등 진술녹화 평균), 비녹화 조사업무 103.61분, ③ 조사 後 처리업무 268.69분)이다.

그에 따라 진술녹화 사건(대구의료원 761건)의 건당 업무량은 605.59분(=192.77분+144.13분+268.69분), 비녹화 조사업무 사건(대구의료원 169건)의 건당 업무량은 565.07분(=192.77분+103.61분+268.69분)이다.

대구의료원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전체의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H_{D(A)}$)은 진술녹화 460853.99분(=761×605.59분), 비녹화 95496.83분(=169건×565.07분), 그리고 위에서 제외되었던 증거채취 29738.34분(=261건×113.94분)으로서 총 586089.16분이다.

그에 따라 대구의료원의 필요인원 수($L_{D(A)}$)는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H_{D(A)}$) ÷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에서, $H_{D(A)} = 586089.16$ 분 및 $L_y = 119,520$ 분(1,992시간, 2013년 기본 근무일수 249일 기준)을 적용한 결과, 4.903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인력표준안: 확장 모형(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 고려)

위의 기초 모형은 사례 접수부터 증거채취, 진술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건화 된 사례만을 대상으로 추정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윈스톱 업무에는 사건화 되지 않은 사례들도 상존한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에는 본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건 외에 조사 단계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소위 非사건 업무 활동 대한 추가 산정이 필요하다.

전체 처리 사건 중 비사건의 수는 현재 지방청 단위는 물론 각 센터 별로도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다. 다만, 센터 전체 차원에서 표준행정시스템 통계가 아닌 수사지원팀에서 별도로 갖고 있는 통계를 통해서 비사건의 비중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2013년도 경기도 아주대 윈스톱센터의 통계를 보면 총 접수 건수가 951건(성폭력 799건, 가정폭력 111건, 성매매 6건, 학교폭력 16건, 기타 19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치 건수는 <표 31>에서 보듯이 진술 녹화 592건, 피해자조서 606 건 등이다. 이를 기초로 하면, 비사건 수(총 접수 건수-피해자조서 건수)는 345건으로서 이 비사건 수를 사건 수에 대비한 비사건 비율($R_{(non-C)} = \text{비사건 수} \div \text{피해자조서 건수}$)을 추정

해 보면 약 5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사건 비율($R_{(non-c)}=57\%$)을 위 대구의료원에 적용하면 약 530.1건 정도의 비사건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어느 원스톱센터이든 비사건의 사건처리 평균 소요시간은 조사 전체 업무 가운데 적어도 조사 前 준비업무에서의 평균 소요시간((192.77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기초 모형에서는 사건처리 중 연가·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손실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경찰관의 연가·교육 등으로 인한 시간 손실은 불가피한 업무 공백으로서, 합리적인 업무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손실 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스톱센터 근무자 100명 중 센터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근무자 71명을 대상으로 연간 총 손실 일수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관 1인당 평균 손실일은 연 8.15일(1일=8시간 근무 손실, $8.15 \times 8\text{시간} = 65.2\text{시간} = 3912\text{분}$)이었다.

기초 모형 식 (2-2)에서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연가·교육)을 고려한 인력표준안 확장 모형을 다시 쓰면,

$EL_{D(A)} = D\text{지역 } A \text{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 (EH_{D(A)}) \div \text{조정된 1인당 연간 근무시간}(AL_y) \text{ -----식 (2-3)}$

단, $EH_{D(A)} = \text{진술녹화사건수}(N_{D(A, V)}) \times \text{진술녹화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_v) + \text{비녹화사건수}(N_{D(A, non-V)}) \times \text{비녹화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_{non-V}) + \text{증거채취건수}(N_{D(A, T)}) \times \text{증거채취 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_t) + \text{非사건 수}(N_{D(A, non-C)}) \times \text{非사건 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_p),$

또

$$N_{D(A, non-C)} = R_{(non-C)} (N_{D(A, V)} + N_{D(A, non-V)}),$$

$$R_{(non-C)} = 0.57, \bar{h}_p = 192.77 \text{분}$$

$$AL_y = L_y - \text{연간 업무손실(연가·교육) 시간}(L_{c(e)}), L_{c(e)} = 3912 \text{분.}$$

대구의료원의 경우 기초 모형의 업무량 ($H_{D(A)}$)= 586089.16분에, 추가된 非사건 처리소요시간($102187.38 \text{분} = N_{D(A, non-C)} \times \bar{h}_p = 530.1 \text{건} \times 192.77 \text{분}$)을 더하면, 688276.54분이다. 여기에 업무손실이 고려된 조정된 1인당 연간 근무시간(AL_y , 115608분=119520분-3912분)을 적용하면 확장 모형에서 요구되는 인력은 5.954명이다.

대구청 이외에도 <표 31>의 원스톱센터별 피해자 지원 조치 건수를 기초로 인력표준안 확장 모형을 적용하여 전국 원스톱센터의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을 추정하면 아래의 <표 32>와 같다.

다만, 아래의 추정치 중에서 부산의료원('13. 8. 28일 개소), 성모병원('13. 5. 9일 개소), 경기 안산('13. 7. 24일 개소) 등은 지난 2013년 중에 개소되어 업무개시 후 기간이 4개월 ~ 7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원스톱센터들의 조치 건수,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은 본 연구의 1년 단위 기준 확장 모형에 따라 추정된 여타 원스톱센터들에 비해 과소 평가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비녹화조사 건수를 피해자조서 건수에서 진술녹화 건수를 차감하여(비녹화조사 건수=피해자조서-진술녹화) 추정하였으나, 전남 성가롤로병원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진술녹화 건수(299건)가 피해자조서 건수(286) 보다 크다. 따라서 자료상으로 비녹화사건에 대해 별도의 조사 건수(및 조사시간)를 구할 수 없어, 동 센터의 전체 사건들이 진술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비녹화사건 조사시간을 결측(=0)으로 추정하였다.

<표 32> 원스톱센터별 업무량(소요시간) 및 소요인원 추정(확장모형 기준)

구분	증거채취 (분)	녹화 (분)	비녹화 (분)	비조사 (분)	전체 소요시간 (분)	소요 인원 (명)
총계	523,782	4,967,049	1,995,261	1,287,781	8,766,528	75.830
서울						
경찰병원	50,020	182,888	211,901	74,388	519,197	4.491
보라매병원	40,563	256,165	163,305	78,234	538,266	4.656
서울대병원	24,383	247,081	167,826	77,465	516,754	4.470
부산						
*부산의료원 ('13.8.28 개소)	5,469	69,643	2,260	13,076	90,448	0.782
동아대병원	18,116	304,006	77,980	70,322	470,425	4.069
인천						
인천의료원	18,230	451,770	27,123	87,244	584,368	5.055
*성모병원 ('13.5.9 개소)	8,318	144,736	203,425	65,817	422,296	3.653
대구						
대구의료원	29,738	460,854	95,497	102,187	688,277	5.954
광주						
조선대병원	28,599	377,888	109,624	89,881	605,992	5.242
대전						
충남대병원	54,008	234,969	19,212	46,369	354,558	3.067
울산						
울산병원	15,382	111,429	74,589	34,722	236,121	2.042
경기						
의정부병원	13,217	155,637	31,644	34,392	234,890	2.032
*안산한도 ('13.7.24 개소)	10,141	52,081	14,127	12,197	88,545	0.766
아주대병원	37,828	358,509	7,911	66,587	470,835	4.073
강원						
강릉동인병원	10,482	55,714	72,329	24,173	162,699	1.407
강원대병원	18,458	81,149	22,603	19,119	141,329	1.222
충북						
청주의료원	21,649	101,739	124,315	42,633	290,336	2.511
충남						
단국대병원	12,419	148,370	43,510	35,381	239,680	2.073
전북						
전북대병원	16,066	198,028	177,432	70,432	461,958	3.996
전남						
목포중앙병원	6,836	153,214	23,168	32,304	215,523	1.864
성가톨릭병원	6,495	181,071	-	31,425	211,645	1.831
경북						
안동의료원	9,571	104,161	70,069	32,524	216,325	1.871
포항선린병원	11,964	89,627	75,719	30,986	208,296	1.802
경남						
마산의료원	16,863	260,404	120,925	70,762	468,954	4.056
제주						
한라병원	38,967	185,916	58,767	45,160	328,811	2.844

3) 인력표준안: 표준 모형(24시간 교대근무 고려)

전국에 설치된 25개 원스톱센터 내의 수사지원팀은 팀장 포함해서 많아야 5명 적게는 불과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수의 인원이 주야간 업무의 단절 없이 24시간 연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약조건 아래 있다.

그로 인해 일상적 피로 외에도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의 3/4이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으며(74%), 또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들 중 약 2/3이 보통 이상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4.9%).

근무 중 외상충격으로부터의 상담과 회복을 위하여 주기적인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그 선호 프로그램 형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원스톱센터 경찰관들은 연 평균 2.3일의 치유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구상될 수 있으나 응답 경찰관들의 71%가 반기별 1일 심층프로그램(연간 2회, 연간 총 2일), 또는 16%가 또는 분기별 반일 상담프로그램((연간 4회, 연간 총 2일) 등 전체적으로 최소한 약 2일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앞선 확장 모형의

$EL_{D(A)} = D$ 지역 A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 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EH_{D(A)}$) ÷ 조정된 1인당 연간 근무시간(AL_y) 중에서

AL_y 를 프로그램 운영 손실(2일=16시간=960분)을 반영하여 재조정하고 i 지역 j 원스톱으로 일반화한 표준 모형(인력표준안) $SL_{i(j)}$ 은

$SL_{i(j)} = \text{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 (EH_{D(A)}) \div \text{재조정된 1인당 연간 근무시간}(RL_y) \text{ -----식 (2-4)}$

단, $RL_y = AL_y - L_{c(p)} = L_y - L_{c(e)} - L_{c(p)} = 115512\text{분}$,

연간 기본 근무시간 $L_y = 119520\text{분}$,

연간 업무손실(연가·교육)시간 $L_{c(e)} = 3912\text{분}$,

연간 업무손실(치유프로그램) 시간($L_{c(p)}$)=960분.

또한 연간 원스톱센터 업무량이 4인 기본 근무량($4RL_y = 462048\text{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24시간 근무로부터 오는 외상 스트레스 극복과 휴식을 위한 4교대제 근무를 도모하고, 아울러 (4인 초과) 업무량 규모에 상응한 (사건조사 외) 여타 행정업무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센터당 1명의 일근 근무인원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

4인 초과 업무량을 갖는 원스톱센터의 일근 요원 추가배치를 고려하면 위의 식 (2-4)는 다음과 같은 표준 모형으로 정리된다.

$SL_{i(j)} = \text{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 (EH_{i(j)}) \div \text{재조정된 1인당 연간 근무시간}(RL_y) + L_y \text{ -----식 (2-5)}$

단, $EH_{i(j)} > 4RL_y, L_y = 119520$,

$EH_{i(j)} < 4RL_y, L_y = 0$.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소요인원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표 33> 원스톱센터별 업무량 및 소요인원(표준모형 기준)

구분	센터 전체 업무량 (분)	현 원 (명)	1인당 업무량 (분)	확장모형 소요인원 $=EH_{i(j)}$	표준모형 소요인원 $=SL_{i(j)}$			
					$L_{c(p)}$ 고려	$EH >$ $4RL_y$	$L_{c(p)} +$ $4RL_y$ 고려	
서울	경찰병원	519,197	5	103,839	4.491	4.495	1	5.495
서울	보라매병원	538,266	5	107,653	4.656	4.660	1	5.660
서울	서울대병원	516,754	5	103,351	4.470	4.474	1	5.474
부산	동아대병원	470,425	4	117,606	4.069	4.073	1	5.073
인천	인천의료원	584,368	4	105,574	5.055	5.059	1	6.059
대구	대구의료원	688,277	5	137,655	5.954	5.958	1	6.958
광주	조선대병원	605,992	5	121,198	5.242	5.246	1	6.246
대전	충남대병원	354,558	4	88,639	3.067	3.069	0	3.069
울산	울산병원	236,121	4	59,030	2.042	2.044	0	2.044
경기	의정부병원	234,890	4	58,722	2.032	2.033	0	2.033
경기	아주대병원	470,835	4	117,709	4.073	4.076	1	5.076
강원	강릉동인병원	162,699	3	54,233	1.407	1.409	0	1.409
강원	강원대병원	141,329	4	35,332	1.222	1.224	0	1.224
충북	청주의료원	290,336	4	72,584	2.511	2.513	0	2.513
충남	단국대병원	239,680	4	59,920	2.073	2.075	0	2.075
전북	전북대병원	461,958	4	115,489	3.996	3.999	0	3.999
전남	목포중앙병원	215,523	4	53,881	1.864	1.866	0	1.866
전남	성가톨릭병원	211,645	4	52,911	1.831	1.832	0	1.832
경북	안동의료원	216,325	3	72,108	1.871	1.873	0	1.873
경북	포항선린병원	208,296	3	69,432	1.802	1.803	0	1.803
경남	마산의료원	468,954	3	156,318	4.056	4.060	1	5.060
제주	한라병원	328,811	3	109,604	2.844	2.847	0	2.847
총계	22개소	7,836,428	85	92,787	67.784	70.688	0	79.688

주: 1) 부산의료원, 인천 성모병원, 경기 안산한도병원 등 3개소 원스톱센터는 지난 2013년 중에 開所,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되어 제외함.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Standard Job Model of the Police in One-Stop Service Center)을 정리하면, 원스톱센터의 표준 직무모형(SJM)이란 “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¹⁵⁾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된다.

<표 34>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직무분석 (업무프로세스)	세부 업무범주	
조사 前 (준비) 업무	조사기초 준비	
	진술녹화 준비	
本 조사 업무	증거물 채취	
	진술녹화	진술녹화 조사
		非녹화 조서
조사 後 (처리) 업무	서류정리	
	피해자 지원	
	조사후 조치	
업무환경	세부 내용	
근무 형태	24시간 교대 근무(외상스트레스 노출)	
업무 손실	연가·교육 등 정상적 손실	
치유프로그램	상담, 심층, 소진방지 프로그램	
인력표준안	세부 내용(소요인력 산출식)	
표준 모형 $SL_{i(j)}$	$SL_{i(j)} = \text{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 } (EH_{i(j)}) \div \text{재조정된 1인당 연간 근무시간}(RL_y) + L_y$ 단, $EH_{i(j)} > 4RL_y, L_y=119520,$ $EH_{i(j)} < 4RL_y, L_y=0.$	

15)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업무단계 구분 및 세부업무 범주 등 직무분석에 관해서는 <표 7> 및 <표 9> 참조.

제2절 표준 직무모형의 정책적 함의

1. 인력 증원

위 <표 33>의 표준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 소요인원 산출에서 보듯이 일부 원스톱센터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현원과 필요인원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량을 갖는 원스톱센터는 대구의료원(688,277분)이며 그 다음으로 조선대병원(605,992분), 인천의료원(584,368분), 보라매병원(538,266분), 경찰병원(519,197분), 서울대병원(516,754분), 아주대병원(470,835분), 동아대병원(470,425분), 마산의료원(468,954분), 전북대병원(461,958분)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산의료원까지 상위 9개 병원은 표준모형에서의 4인 기준 연간 기본 근무시간($4RL_y=462,048$ 분, $RL_y=115512$ 분)을 초과하고 있으며, 전북대병원 역시 $4RL_y$ 에 근접하고 있다.

전체 업무량 규모와는 별개로 각 원스톱센터는 경찰관 현원이 각기 다르다. 현원에 대비한 1인당 업무량이 가장 많은 곳은, 3명의 인원이 $4RL_y$ (462,048분) 이상의 조사업무(468,954분)를 처리하고 있는 마산의료원으로서 그 1인당 업무량은 156,318분이다.

마산의료원 다음으로 1인당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센터는 대구의료원(137,655분), 조선대병원(121,198분), 아주대병원(117,709분), 동아대병원(117,606분), 전북대병원(115,489분), 한라병원(109,604분), 보라매병원(107,653분), 인천의료원(105,574분), 경찰병원(103,839분), 서울대병원(103,351분) 등의 순이다.

특히 마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조선대병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의 상위 5개 원스톱센터는 1인 연간 기본 근무시간($RL_y=115512$ 분)을 초과하고 있고 전북대병원의 경우 거의 RL_y 에 근접하고 있다.

이상 원스톱센터별 업무량 규모 및 1인당 업무량, 표준모형 소요인원을 고려할 때 현재 현원 대비 부족한 인원을 산출해보면 <표 35>와 같다.

<표 35> 원스톱센터별 소요인원 및 부족인원

구분		센터 전체 업무량	1인당 업무량	현원 (명)	표준모형 소요인원 = $SL_{D(A)}$	현원대비 부족인원 (명)
경남	마산의료원	468,954	156,318	3	5.060	2.060
인천	인천의료원	584,368	105,574	4	6.059	2.059
대구	대구의료원	688,277	137,655	5	6.958	1.958
광주	조선대병원	605,992	121,198	5	6.246	1.246
경기	아주대병원	470,835	117,709	4	5.076	1.076
부산	동아대병원	470,425	117,606	4	5.073	1.073
서울	보라매병원	538,266	107,653	5	5.660	0.660
서울	경찰병원	519,197	103,839	5	5.495	0.495
서울	서울대병원	516,754	103,351	5	5.474	0.474
전북	전북대병원	461,958	115,489	4	3.999	-0.001
제주	한라병원	328,811	109,604	3	2.847	-0.153
대전	충남대병원	354,558	88,639	4	3.069	-0.931
경북	안동의료원	216,325	72,108	3	1.873	-1.126
경북	포항선린병원	208,296	69,432	3	1.803	-1.197
충북	청주의료원	290,336	72,584	4	2.513	-1.496
강원	강릉동인병원	162,699	54,233	3	1.409	-1.591
충남	단국대병원	239,680	59,920	4	2.075	-1.925
울산	울산병원	236,121	59,030	4	2.044	-1.956
경기	의정부병원	234,890	58,722	4	2.033	-1.967
전남	목포중앙병원	215,523	53,881	4	1.866	-2.134
전남	성가롤로병원	211,645	52,911	4	1.832	-2.168
강원	강원대병원	141,329	35,332	4	1.224	-2.776

현원에 대비하여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으로서 2.06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등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의 소요인원(-0.001명)을 보면 현재로서는 증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업무량(115,489분)이 RL_y (115,512분)에 거의 근접하고 전체 업무량(461,958분) 역시 $4RL_y$ (462,048분)과 사실상 같아 일근 인원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한라병원 역시 현재 증원을 요하지는 않으나 1인당 업무량(109,604분)이 전북대병원(115,489분)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다. 또한 3인 근무체제에 비해 전체 업무량(328,811분)이 전국 12번째로 많아, 4명 근무 현원을 가진 다수 원스톱센터들 보다는도 업무량이 많다. 따라서 향후 업무량 추이를 보면서 증가 추세가 확인되면 증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¹⁶⁾은 2명 증원, 조선대병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은 1명 증원이 시급하다.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지역 원스톱센터도 1명의 증원이 요구된다. 전북대병원과 한라병원도 업무량 증

16) 인천지역은 '13. 5. 9일 성모병원 원스톱센터(경찰관 4명)가 개소되었기 때문에 5월 이후 인천의료원 원스톱센터(경찰관 4명)의 업무량이 일부 성모병원으로 분산되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료원은 2013년 $4RL_y$ 이상 업무량을 처리하였다(584,368분). 다만 최근 개소한 성모병원이 개소 후 2013년 말까지 단지 8개월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량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422,296분). 2014년 성모병원의 업무량 변동 추이를 함께 보면서 인천의료원의 증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추세 확인 후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6> 원스텝센터별 증원 필요 인원 및 고려 사항

구분		현원 (명)	표준모형 소요인원 $=SL_{D(A)}$	부족 인원 (명)	필요 인원 (명)	필요 정도	고려 사항
경남	마산의료원	3	5.060	2.060	2	매우긴급	
인천	인천의료원	4	6.059	2.059	2	매우긴급	최근 開所한 성모병원 업무량
대구	대구의료원	5	6.958	1.958	2	매우긴급	
광주	조선대병원	5	6.246	1.246	1	긴급	
경기	아주대병원	4	5.076	1.076	1	긴급	
부산	동아대병원	4	5.073	1.073	1	긴급	
서울	보라매병원	5	5.660	0.660	1	보통	업무량 지속 시 증원 배치
서울	경찰병원	5	5.495	0.495	1	보통	업무량 지속시 증원 배치
서울	서울대병원	5	5.474	0.474	1	보통	업무량 지속시 증원 배치
전북	전북대병원	4	3.999	-0.001	1	검토	업무량 증가추세 확인 후 증원
제주	한라병원	3	2.847	-0.153	1	검토	업무량 증가추세 확인 후 증원
계	11개소	47	57.947	10.947	14		

2. 조사 인프라의 개선

인력 증원 외에도 피해자 조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업무환경에는 우선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물리적 업무여건을 들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범주로 조사 시설, 조사 장비, 전산시스템 등 물적 인프라를 들 수 있다.

원스톱 근무 경찰관 대상 설문에서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업무 여건(물적 인프라)의 우선순위를 물었는바, 응답자 81명 중에 39명이 시설, 장비, 전산시스템 가운데서도 조사 장비의 개선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부분은 조사실, 상담실 등 조사시설(31명)이었으며, 전산시스템 개선은 1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업무 여건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비율이(48.1%) 조사 장비의 개선을 지적한데서 보듯이 조사 인프라 개선을 설계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 장비 부분의 개선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조사 장비에 관하여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개선을 요구한 답변자들은(94명) 조사 장비 가운데서 영상과 녹음 장비를 같은 비중으로 지적하였다(각각 41명).

주목할 것은 소수 의견이지만 진술녹화실과 모니터실 간 방음장치 개선 의견(6명)이다. 이는 조사시설 개선의 기타 의견에서 모니터실을 시각적으로 비노출 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3명)과도 관계되므로, 향후 방음장비의 개선과 함께 진술녹화실과 참관인실에 대한 비노출 차단 설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조사 시설(업무 공간)에 관한 별도의 설문에서, 시설 개선을 요구한

답변자 95명은 조사 시설 중에서도 특히 상담실의 확충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32명). 다음으로 진술녹화실의 확충을 들었으며(30명), 보호자를 위한 대기시설도 그 확충 필요성을 지적하였다(25명).

조사시설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들 가운데 각각 약 1/3이 상담실과 진술녹화실의 개선을 지적한데서 보듯이 시설개선을 설계할 경우 우선 상담실과 녹화실의 면적확대 또는 별개 공간 추가 설치(복수 공간 설치)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산시스템에 관한 별도의 설문에서,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96명)들은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117 형태의 시스템 개발을 선호하였다(54명). 그 다음으로 현재 여가부 표준행정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으로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36명), 이밖에 피해자조사 결과에 대한 입력 등 업무가 현 경찰청의 키스(KICS) 전산망을 통해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을 요구하였다.

앞서 보았듯이 원스톱 조사업무 프로세스 중 조사 後 업무 단계에서 각종 서류정리(113.33분) 예를 보면 본 조사 업무 못지않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증거채취, 113.94분).

현재 본 조사보다도 더 긴 조사 後 업무 단계의 소요시간은 전산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번잡한 수작업 통계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원스톱 내외의 기능 간 협조

1) 원스톱센터 內 지원기능 간 업무 협조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 전체 100명중 69명이 업무수행 중 원스톱센터 여타 지원기능과 애로가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그 중 의료지원 기능과의 애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2명). 그 다음으로 상담지원 기능과 애로가 있다고 답한 경찰관이 17명, 심리치료지원 기능과의 애로 8명, 행정지원 기능과의 애로 2명 순이었다.

애로가 있다고 답한 경찰관 69명 중 25명은 애로 발생 이유로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구성원 간 인식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기능 간 인식 차이에서 오는 애로는 팀별로 각기 상이한 성격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 다음으로 매우 심각한 것은 인력 부족에서 발생하는 애로이다.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애로는 모두 14명이 답하였으며 특히 간호사(7명)와 심리치료 인력(7명) 부족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주말 및 야간에는 경찰관과 상담사만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팀이 없기 때문에 긴급한 피해자가 장시간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지원팀 입장에서는 응급치료 및 증거채취 등 조사업무 수행상 무엇보다 필요한 간호인력, 의료지원 기능과의 업무협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원스톱센터 외 경찰기능 간 업무 협조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원 전체 100명중 80명이 업무수행 중 타 경찰기능과 애로가 있었다고 답하였으며,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많은 업무 관

계를 갖고 있는 경찰서의 형사팀, 성폭력 전담수사팀 또는 지구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79명).

경찰기능간 애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원스톱센터 내 지원기능의 예와 같이 기능 간 인식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을 들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56명).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와 피의자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간에는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차이, 검거위주와 피해자지원 위주의 업무 차이가 있고 원스톱센터 근무자의 관점에서는 일선 수사부서가 피해자 보다는 사건위주로 검거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방식으로 성폭력 사건처리가 지속되면 원스톱은 원스톱대로 피해자 조사에만 더욱 매몰되어 가고, 일선 성폭력 수사 기능은 수사팀대로 피해자 조사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건해결 단서를 구하지 못한 채 피의자 수사와 사건해결에만 몰두하게 되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성폭력 수사의 효과적인 진행과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등 관련자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면에서 현재 피해자 조사를 원스톱에서 전담하는 체제는 일부 난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원스톱에 피해자 보호와 조사기능을 전담시키는 것보다는 주요 사건에 대한 지방청 성폭력수사대의 원스톱센터 공동 조사 등의 근무형태를 통해 원스톱과 수사기능간의 업무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상담·치유프로그램의 개발

수사지원팀은 소수의 인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지속해야하는 어려운 근무 여건 아래에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업무시간상 손실은 일반적인 경찰 근무의 경우 정상적인 교육 입교와 연가 실시로 나타나지만,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근무 중 경험한 비정상적인 사건 상황과 그로부터 입은 외상 스트레스의 치유프로그램 참여(시간)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스톱센터 경찰관의 3/4이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의 약 2/3가 보통 이상으로부터 극심한 수준에 이르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충격 회복과 원스톱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와 기간의 상담 프로그램, 심층 치유프로그램, 소진방지 워크숍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원스톱센터 근무 경찰관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도, 단순한 상담 프로그램 형태를 희망하기(16명) 보다는 반기별로 이루어지는 심층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선호하였으며(71명),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한 상담 형식 보다 종합적이면서도 집중적, 전문적으로 심화된 심층적 치유 프로그램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업무 공백에 대한 타 근무자의 대체 근무 및 그로 인한 업무 피로도 누적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은 결국 인력 증원의 요청으로 귀결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전국 25개소 원스톱센터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원스톱지원센터의 직무·인력 표준안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해자조사 1건당 업무량에 대한 분석결과를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개관해 보면, 우선 조사 전 단계로서 사건내용 확인, 조사일정 준비 등의 조사기초 준비는 1건당 평균 약 94분, 진술녹화 준비는 99분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단계에서 증거자료 수집은 평균 114분으로 나타났고, 이후 각 조사 유형별로 일반 피해자 진술녹화의 경우 121분, 아동피해자 140분, 장애피해자 157분, 장애아동피해자 158분, 이외 진술녹화를 하지 않는 비녹화 조서작성의 경우 104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후 단계에서 서류정리는 1건당 평균 113분이 걸렸으며, 피해자 지원 업무는 73분, 조사 후 조치는 83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인력표준안 도출을 위한 최종 “표준 모형”으로서 $SL_{i(j)} = \text{연간 사건처리 소요시간}(EH_{i(j)}) \div \text{재조정된 1인당 연간 근무시간}(RL_y) + L_y$, $EH_{i(j)} > 4RL_y$, $L_y = 119520$, $EH_{i(j)} < 4RL_y$, $L_y = 0$ 를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을 정리하면, 원스톱센터의 표준 직무모형이란 “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표준 모형)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으로서 2.06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등이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병원 소요인원(-0.001명)을 보면 현재로서는 증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1인당 업무량(115,489분)이 RL_y (115,512분)에 거의 근접하고 전체 업무량(461,958분) 역시 $4RL_y$ (462,048분)과 사실상 같아 일근 인원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한라병원 역시 현재 증원을 요하지는 않으나 1인당 업무량(109,604분)이 전북대병원(115,489분)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은 상황이다. 또한 3인 근무체제에 비해 전체 업무량(328,811분)이 전국 12번째로 많아, 4명 근무 현원을 가진 다수 원스톱센터들 보다도 업무량이 많다. 따라서 향후 업무량 증가 추세가 확인되면 증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마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은 2명 증원, 조선대병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은 1명 증원이 시급하다. 보라매병원,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등 서울 지역 원스톱센터도 1명의 증원이 요구된다. 전북대병원과 한라병원도 업무량 증가추세 확인 후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력 증원 외에도 피해자 조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스톱 근무 경찰관 대상 설문에서 현재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업무 여건(물적 인프라)은 조사 장비의 개선(39명)이며 다음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부분은 조사시설 개선(31명)과, 전산시스템 개선(1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업무 여건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들 중에서도 과반에 가까운 비율이(48.1%) 조사 장비의 개선을 지적한데서 보듯이 조사 인프라 개선을 설계할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 장비 부분의 개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소수 의견이지만 진술녹화실과 모니터실 간 방음장치 개선 의견(6명)은 조사시설 개선 의견에서 모니터실을 시각적으로 비노출 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3명)과도 관계되므로, 향후 방음장비 개선과 함께 진술녹화실과 참관인실에 대한 비노출 차단 설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조사 시설(업무 공간)에 관한 별도의 설문에서, 특히 상담실의 확충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32명). 다음으로 진술녹화실의 확충을 들었으며(30명), 보호자를 위한 대기시설도 그 확충 필요성(25명)을 지적하였다. 조사시설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들 가운데 각각 약 1/3이 상담실과 진술 녹화실의 개선을 지적한데서 보듯이 시설개선을 설계할 경우 우선 상담실과 녹화실의 면적확대 또는 별개 공간 추가 설치(복수 공간 설치)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산시스템에 관한 별도의 설문에서, 개선을 요구한 응답자(96명)들은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117 형태의 시스템 개발을 선호하였다(54명). 그 다음으로 현재 여가부 표준행정시스템의 효율적인 접근(36명), 현 경찰청의 키스(KICS) 연계 이용 등을 요구하였다.

현재 본 조사보다도 더 긴 조사 後 업무 단계의 소요시간은 번잡한 수작업 통계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스톱센터 내 기능 간 애로를 보면 의료지원 기능과의 애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애로가 있다고 답한 경찰관 69명 중 25명은 애로 발생 이유로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구성원 간 인식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매우 심각한 것은 간호사 등 인력 부족에서 발생하는 애로인바, 경찰의 수사지원 입장에서는 응급치료 및 증거채취 등 조사업무 수행상 무엇보다도 긴요한 간호인력, 의료지원 기능과의 업무협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경찰기능 간 애로를 보면 대부분 경찰서의 형사팀, 성폭력 전담수사팀, 지구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79명), 경찰기능 간 애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원스톱센터 내 지원기능의 예와 같이 기능 간 인식 차이와 상호 이해 부족을 들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56명).

성폭력 수사의 효과적인 진행과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등 관련자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면에서 현재의 피해자 조사를 원스톱에서 전담하는 체제는 일부 난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원스톱에 피해자 보호와 조사기능을 전담시키는 것보다는 주요 사건에 대한 지방청 성폭력수사대의 원스톱센터 내 피해자 공동 조사 참여, 순환 파견근무 등의 근무형태를 통해 원스톱과 수사기능 간의 업무 소통과 협력체계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원스톱센터 경찰관은 3/4이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경험하고, 심리적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의 약 2/3가 보통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충격 회복과 원스톱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와 기간의 상담 프로그램, 심층 치유프로그램, 소진방지 워크숍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자 업무 공백에 대한 타 근무자의 대체 근무 및 그로 인한 업무 피로도 누적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것은 결국 인력 증원의 요청으로 귀결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표준 직무모형 구축 과정에서, 수사지원팀 업무 범위를 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와 조사 환경 등 사후적 “**사건조사**”에 따른 미시적 직무분석에만 집중함으로써 업무량 분석 결과가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사지원팀 팀장(또는 부소장 겸직 팀장)의 고유 업무, 팀원의 행정업무 등 발생사건 조사 외의 여타 업무들을 포괄함으로써 수사지원팀의 원스톱센터 내 역할과 진정한 업무 총량이 거시적 시각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경찰청, 경찰백서, 2010-2013 각년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매뉴얼, 2014. 2.

여성가족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2012. 1.

여성가족부,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사업안내, 2012. 1.

정 응,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소, 2012.

주학중 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치안정책연구소, 4대 사회악 연구자료집, 2013.

2. 논문 및 기타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원스톱센터 운영실적”, 2008-2013 각년도.

경찰청 외사정보과, “美경찰의 업무량에 따른 조직·인력 진단 사례 분석”,
2012. 8. 29.

경찰청, “2014년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계획”, 2014. 2.

장철영,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한국민간경비학회
보, 제13권 제1호, 2013.

정 응,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 정 응,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 미간행 보고서, 2013. 9.
- 정 응,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 차영주, “대리외상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외상신념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ONE-STOP 지원센터 근무 여자경찰관 중심으로”,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황성현, “경찰예산규모의 적정화와 운용의 효율화”, 한국개발연구원, 1992.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 Ageton, S. S., *Sexual assault among adolescent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83.
- The Vancouver Police, *Patrol Deployment Study*, 2007. 2. 5.

2. 논문

- Felson, Richard B., Cundiff, Patrick R, “Sexual Assault as a Crime Against Young Peopl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Vol. 43, No. 2, 2013.
- Kim, Su-Kon, Park, Ye Kyu and Yun-Dan Kang, “ANALYSIS OF

SEXUAL ASSAULT VICTIMS: BASED ON DATA FROM A ONE-STOP SERVICE CENTER IN CHUNGCHEONGNAM-DO”,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Vol. 55, No. 10, 2012.

Ⅲ. 인터넷 자료 및 신문류

아시아경제, “국민 3명중 1명 '사회 안전해'…가정폭력 불안감은 증가”, 2014. 12. 26.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성·학교폭력 ONE-STOP센터)”, <http://www.mogef.go.kr>(2014. 5. 30 검색).

[부 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8호, 2014.1.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21.>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1.21.>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4.5.28.>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1.21.>
- ④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
- ⑤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⑥ 여성가족부장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⑦ 여성가족부장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정사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 ⑧ 여성가족부장은 제5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 ⑨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1.21.>

[시행일 : 2015.7.1.] 제5조

-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

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

제6조(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목개정 2011.3.30.]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의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제목개정 2012.12.18.]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 피해자들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시설의 입소) ① 피해자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17조(보호시설의 퇴소)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 상담, 치료,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④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22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제23조(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제22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피해자들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들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제25조(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정신적 치료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칙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30.>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2.12.18.>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업무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18.>

부칙 <제12328호,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시행일 : 2014.9.29.] 제2조

제3조(해석상·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

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9조(「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 ④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제3항·제5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2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 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①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46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청소년
 2.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및 형제·자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소년부 송치) 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

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감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감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해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2.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이나 우편물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와 접촉을 하는 행위의 금지
- 5.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위탁결정 등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2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보호처분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제41조 각 호의 보호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그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처분 기간의 연장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은 각각 6개월 이내로 한다.
- ④ 보호처분 청구사건의 판결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처분 후 주거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보호처분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검사, 피해자, 가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3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① 검사는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보호처분이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호처분의 변경 또는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⑤ 검사는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2.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3.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

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실행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나이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5. 사진
 6.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한다)
 7.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④ 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고지명령을 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신고받은 자로 본다.
-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4.1.21.>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 ② 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지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고지대상자, 고지기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고지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고지대상자가 출소하는 경우 출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지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고지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상세주소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14.1.21.>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구역에 설립·설치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 중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위임을 받은 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은 우편송부 및 게시판 게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 외에도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고지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 ⑨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 ② 법원은 공개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개기간 동안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초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공개대상자, 공개기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공개명령의 집행·공개절차·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 제56조제1항제1호의 유치원, 같은 항 제2호의 학교, 같은 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56조제1항제11호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같은 항 제13호 각 목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및 같은 항 제1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3. 보건복지부장관: 제56조제1항제7호의 어린이집, 같은 항 제8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항 제12호의 의료기관
- 4. 여성가족부장관: 제56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같은 항 제5호의 청소년활동시설, 같은 항 제6호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같은 항 제9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성매매피해상담소, 같은 항 제15호의 청소년활동기획소 및 같은 항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5. 국토교통부장관: 제56조제1항제10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 6. 경찰청장: 제56조제1항제14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또는 관련 감독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제57조, 제58조 및 제67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보호관찰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2329호, 2014.1.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9조 삭제 <2013.4.5>

제20조(「형법」 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2.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3.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여부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일자를 밝혀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하여 등록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회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2013.4.5]

제4장 벌칙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 또는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1556호, 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04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간의 계산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다.

⑥ 제2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

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제4항의 고지 사항을 서면으로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6조제4항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책임연구보고서 2014-13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

2015년 3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